

충청남도의회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3. 연구의 추진 체계	6
4. 연구의 추진 경과	8
제2장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	11
1.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 경위	12
2. 제4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3
3.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지역 문제	14
4.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성	15
제3장 충남의 사회적 농업	17
1. 사회적 농업의 정의	18
2. 사회적 농업의 유형	19
3. 사회적 농업 관련 정책	20
제4장 사회적 농업 실태 분석: 기반 조성	31
1.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 개요	32
2.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 결과	37
3. 사회적 농업 전문가 자문 결과	52
4. 시사점	56
제5장 사회적 농업 수요 분석: 대상 분석	59
1. 충남 사회적 취약계층 수요 분석 개요	60
2. 충남 사회적 취약계층 수요 분석 현황	61
3. 시사점	83
제6장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85
1. 2020년 시범사업	86
2. 충남 사회적 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3
3. 조례 제정	95
4. 향후 과제	97
부록	99
1. 사회적 농업 현장 세미나 개최	100
2. 협동조합 행복농장	101
3.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106
4. 충남도청 사회적 농업 관계실과 협의 회의록	116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추진 체계
4. 연구의 추진 경과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제적 차원: 최근 사회적 약자(취약계층)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일자리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 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일자리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에는 지역의 보건소·병원·정신건강센터·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복지·요양 시설,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와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국가적 차원: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보다 지역사회와 결합한 형태의 지역 수요 맞춤형 복지정책 필요

- 이에 발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2018)을 시작으로 사회적 농업은 도입 단계에 있음
- 현재로서는 농업농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복지와의 연결 고리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
- 사회적 농업은 국정과제 가운데 포용적 복지국가 이외에도 공정사회,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및 균형발전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7)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대 (복지부)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
	2 반부패 개혁으로 정당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정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24 재벌 중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융합한 정부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정통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지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7)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78 전 지역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안부) ✓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80 해운·조선 산업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46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략적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50 고실력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91 남북기본합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연합 추진 (통일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행안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그림 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성

- 지역적 차원: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행복농장’은 사회적 농업 선진 모델 사례로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정작 지역 차원의 관심이 미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선정된 곳은 충남에서 1개소에 그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유기농업과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사회적경제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사회적 농업 확산의 잠재성은 높은 편임

2) 연구의 목적

- 충남의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도출
- 충남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농업과 지역복지정책이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충남의 사회적 농업 지원 기반 마련
- 충남에서 사회적 농업 육성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충남의 입법정책으로 활용하고자 함

3) 기대효과

-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조성
- 지역 현장 기반의 지역복지문제의 접근 및 농업으로의 확대
- 도시와 농촌의 지역통합 및 도민통합에 기여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충남 사회적 농업 실태 분석: 기반 조성

- 충남 사회적 농업 관련 현황 파악
- 충남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실태 조사
- 충남의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 잠재적 농장을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 육성 기반의 틀 마련

■ 충남 복지 대상 분석: 수요 분석

- 충남의 복지 대상에 대한 지역 단위 데이터 수집 및 현황 파악
-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수요 발굴을 위한 기초 작업

■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제안

- 사회적 농업 관련하여 도의회, 관련 자문가 및 충청남도 관계실과 협의 등을 통한 의견 조정 및 수립, 정책 제안 및 정리
- 2020년 충남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개발
- 지원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지원
-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관계실과 협의 체계 마련
- 향후 과제 제시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목표년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 충남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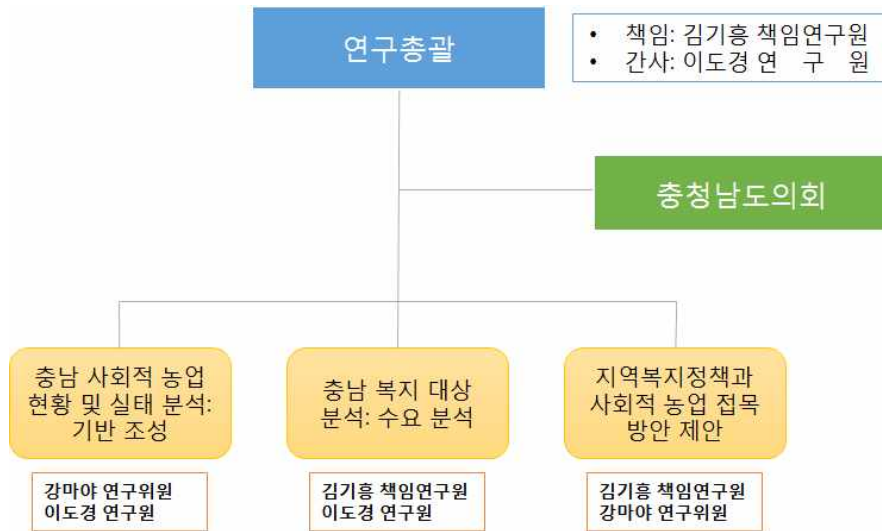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2020년 사회적 농업 지원 관련 예산 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 연구기간 : 2019.05.08 ~ 2019.11.03 (180일)

■ 연구금액 : 14,4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3. 연구의 추진체계

1) 연구의 추진체계



[그림 2] 연구진 구성 및 추진체계

2) 연구진의 구성

[표 1] 참여 연구진

참여업무	직위	성명	전공	주요 담당분야
연구책임	책임연구원	김기흥	유기농업, 농업정책	연구총괄 및 기획, 현장조사 및 분석, 정책방안
연구참여	연구위원	강마야	농업경제 및 농업경영	현황분석, 정책방안
	연구보조원	이도경	농업경제 및 식품경영	연구간사

비상임 연구 자문단		
제도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책	충남도청 실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농림축산국),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자립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이하 저출산보건복지실)
학술	학술 자문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장	현장 자문	최정선 행복농장 이사, 정민철 협업농장 상임이사

■ 연구의 책임성과 정책 도입의 즉시성 제고를 위한 비상임 연구 자문단 운용

■ 책임성, 즉시성, 적법성, 지속성을 고려한 연구 생태계 구축

3) 연구의 추진 일정

[표 2] 연구의 추진 일정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내용		연구 추진 일정					
		1개월 (5월)	2개월 (6월)	3개월 (7월)	4개월 (8월)	5개월 (9월)	6개월 (10월)
▶ 현황 및 자료 수집							
▶ 현장조사 및 전문가 면담							
▶ 시범사업 발굴 및 조례안 검토							
▶ 중간보고회							
▶ 시범사업 구체화, 조례안 제정 지원 ▶ 보고서 작성 및 수정, 보완							
▶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회							
▶ 기타	▶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 행사	현장 조사	현장 조사	2020년 예산수립 지원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 계	▶ 당월(%)	10	20	20	20	20	10
	▶ 누계(%)	10	30	50	70	90	100
착수보고			최종보고				
- 과제 방향 설정 및 연구 수행 설명 - 사회적 농업 개요 - 사회적 농업 국내외 사례			2020년 충남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마련 - 충남도 사회적 농업 조례 제정 지원 - 충남도 관계실과 협의 체계 마련				

최종보고회

4. 연구의 추진 경과

■ 연구의 추진 경과

[표 3] 추진 경과

경과 내용	일시	장소
보고회		
착수보고회	2019.05.17. 14:00~16:00	충청남도의회
중간보고회	2019.09.06. 14:00~16:00	충청남도의회
최종보고회	2019.11.04. 14:00~16:00	충청남도의회
현장 조사 및 전문가 면담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현장조사	2019.04.11. 14:00~18:00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예산군 황새연합회 현장조사	2019.06.13. 14:00~16:00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울산 금곡영농조합법인 현장조사	2019.07.05. 11:00~18:00	울산 금곡영농조합법인
충남 홍성 행복농장, 젊은협업농장 현장조사	2019.07.11. 11:00~18:00	홍성 젊은협업농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 현장컨설팅	2019.07.26. 10:00~16:00	홍성 오누이다목적회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면담	2019.07.26. 15:00~18:00	홍성 오누이권역
충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 면담	2019.07.29. 11:00~12:00	충남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면담	2019.08.14. 17:00~19:00	서울 aT센터
충남 논산 팜팜농장 현장조사	2019.08.30. 15:30~18: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충남 서천 아리랜드 현장조사	2019.08.31. 11:00~18:00	충남 서천군 마서면 아리랜드
(사)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현장조사	2019.09.01. 11:00~18:00	충남 천안시 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회적 농업 지표 설정 관련 자문회의	2019.09.10. 14:00~16:00	농정연구센터
충남 청양 청양푸드 현장조사	2019.09.24. 14:00~16:00	충남 청양군 대치면

	충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정석호 박사 면담	2019.10.01 16:00~18:00	충남연구원
업무협약	김연 위원장	2019.05.10. 15:00~17:00	충남도의회
	김연 위원장	2019.08.08. 15:00~17:00	천안시청 근처
	충청남도 관계실과 협의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2019.08.09. 14:00~18:00	충남도청
	충남도 농정과	2019.08.19. 14:00~17:00	충남도청
	양금봉 의원	2019.08.27. 10:00~18:00	충남도의회
	충남도 농정과	2019.08.28. 16:00~18:00	충남도청
	김명숙 의원	2019.09.02. 17:00~20:00	충남도의회
	충남도청 관계실과 협의 (2국 1실 1관 8개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보육지원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청소년팀)	2019.10.22.14:00~16:00	충남도청 문예회관

최종보고회

■ 보고서 의견 및 반영 내용

[표 4] 착수보고회 의견 및 반영 내용

의견 내용	반영 내용
■ 충남 내의 사회적 농업 수행 가능 대상 및 내용 구체화	■ 시범사업(20년도 4개소 3억2천만 원) 반영을 통해 참여 대상, 유형, 내용을 구체화
■ 기존의 마을지원사업을 재정비하여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마련이 필요	■ 지역사회에의 복지 거점 역할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연구의 방향 설정
■ 세부사업에 대해 투자대비 성과 발생과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 상세화	■ 농정과 및 도의회 협의, 현장조사, 전문가 면담을 통해 사업안에 반영 ■ 도의회와 협의하여 관례조례 정비
■ 사회적 농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조사” 단계까지 조례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약자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논의 구조 및 자원조사와 교육 부문을 시범사업에 반영
■ 충남도만의 특별한 사회적 농업 개념 정의 마련 필요	■ 농촌 복지 문제에 대한 지역단위 논의 체계 구축을 충남도만의 사회적 농업 개념으로 정립시키고자 하며 조례안에 반영하여 지원 근거 마련

[표 5] 중간보고회 의견 및 반영 내용

의견 내용	반영 내용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의	■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농업 및 취약계층, 사회적 농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음
■ 사회적 농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 사회적 농업의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향후 지속성을 담보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사회적 농업의 이익금 배분에 관한 문제	■ 운영주체와 참여대상에서 구분될 것이나,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쓰이도록 시범사업에서 유도할 계획임
■ 보호작업장이나 체험농장과 차별화	■ 사회적 농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서 차이가 나며, 단순 일자리 제공이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별화해 나갈 예정임
■ 단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와 농촌을 연계하여 다양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세분화 시켜 포함시켜주면 좋겠음	■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로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이며, 현재 농식품부의 방침도 다양한 국민의 참여 확대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2장

충남의 지역사회 복지정책

1.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 경위
2. 제4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지역 문제
4.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성

제2장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

1.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 경위

- 정부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치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의무화 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실행
 -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국민의 생활안정, 공중위생, 사회보장제도 등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정책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전반적인 복지에 관한 사업과 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사회보장기본법 제2조1항)
 -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2조2항)
-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충남에서는 2007년 제1기 충청남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작으로 4년에 한번 단위 계획을 수립해 옴
- 2015년 12월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이 마련되었으며 민선 7기의 복지수도 충남 실현의 발판이 된다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고령, 장애, 빈곤, 질병 및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적서비스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1항)

2. 제4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목표 : 다함께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

■ 추진전략 : 1. 커뮤니티 케어 공공성 강화,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화, 3. 복지서비스 확대 및 전문성 강화, 4. 안전 및 인권 강화

■ 중점과제

- 1-1. 충남아기수당, 1-2.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강화, 1-3. 재가 발달 장애인 기초실태 정보구축
- 2-1. 노인일자리 지원 및 창출 사업, 2-2.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 3-1.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3-2. 지역균형발전 충남복지 거버넌스 구축, 3-3.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읍면동 활성화 지원
- 4-1. 보건복지연계 자살예방사업 추진, 4-2.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 컨설팅 및 매뉴얼보급, 4-3. 장애물 없는 환경 구축

■ 기타 과제

- 1-4. 찾아가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확대, 1-5.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1-6.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 비용 지원 확대
- 2-3.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확대 지원, 2-4. 신중년 전문강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 3-4. 민관사례관리 전문가 역량 강화, 3-5. 노인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확대, 3-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확대 지원
- 4-4.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4-5. 폭력위기가정 모니터링 강화, 4-6.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 4-7. 충남 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 강화, 4-8. 사회복지 전문 변호사 제도

■ 제3기에서 제4기 변화의 의미

-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지자체 내 실행기반은 취약하였기에 지자체 주도성을 향상하고자 함
- 지금까지의 관 주도 방식에서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사회보장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자체 사업 개발을 위한 근거 정보가 미흡하여 근거 기반의 계획을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가사회보장사업 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함

- 지역의 이해와 추진 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국의 균형적인 사회보장을 추진하고자 함

3.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지역 문제

- 제4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역 문제들이 도출되었음
- 지역별 인구 불균형 : 인구에 의한 인프라 편성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 노인분야, 장애인 분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분야의 지역별 수요 공급에 격차가 큼
- 사회보장서비스 공급자 간담회 결과, 필요한 사업으로는 노인자살예방,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취약 계층 발굴, 장애인 정책 옹호, (아동)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여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협의체 활성화 등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간담회 결과, 필요한 사업으로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독거노인 공공 생활홈 확대 등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관련 민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필요한 사업으로는 치매노인 지원, 맞벌이 부부 지원, 시설에 있는 아동과 노인 보호, 그룹홈 확대보다 인력 지원 필요, 피학대 아동 일시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에게 인권 교육 강화, 피학대 아동 정신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남
-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장 대상 순위로는 취약전 영유아 21.4%, 저소득층과 노인 20.6%, 아동(초등학생) 10.6%, 여성과 가족(폭력, 한부모, 조손가족) 10.4%, 청소년 8.0%, 청년(20-30대) 6.6%, 장애인 2.8%,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 0.2% 순이었음
-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장 영역으로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성인 돌봄

32.8%, 아동 돌봄(육아, 양육) 20.7%, 기초생활 유지(식사, 공과금 등) 16.7%, 보호와 안전(학대, 폭력) 7.7%, 신체적 건강 6.6%, 고용 일자리 6.2%, 평생교육 3.9%, 정신건강 3.2%, 주거 1.7%, 문화 여가 1.0%, 환경 오염 0.4%, 지역공동체 0.4% 순이었음

4. 충남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성

- 첫째, 제4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인 커뮤니티 케어 공공성 부문과 일자리 창출 개념,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부문과 인권 강화 등은 사회적 농업이 추구하는 기능과 역할에 맞닿아 있음
- 둘째, 기본계획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지역 문제 가운데 지역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복지 관련 기관 등의 인프라 편성에 대한 문제는 시군이 처한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볼 수 있어 농촌 복지와 관련한 관심이 필요함
 - 더불어 그 해결책은 단순히 시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 복지 대상 즉 사회적 약자의 위치 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함
 - 예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군 경계지역 중심의 거점 시설 검토 등 (마을현장세미나, 2019. 4. 15)
- 셋째, 기본계획의 지역사회주민 욕구 조사 결과 나타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장 영역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돌봄, 아동 돌봄, 고용 일자리 문제에 대해 사회적 농업이 가지는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회보장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수혜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찾게 하며, 지역공동체 기능의 회복(resilience) 뿐 아니라 국가 혹은 지자체의 공공적 기능의 짐을 덜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됨

제3장

충남의 사회적 농업

1. 사회적 농업의 정의
2. 사회적 농업의 유형
3. 사회적 농업 관련 정책

제3장 충남의 사회적 농업

1. 사회적 농업의 정의

■ 사회적 농업의 정의

-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의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등)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사회적 농업의 목적

- 사회적 농업은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3] 사회적 농업의 정의

2. 사회적 농업의 유형

■ 유형 1 : 돌봄

-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이나 단체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됨
-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업 활동 수행
-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과 시간에 농업활동 수

행, 병원, 요양 시설 등의 보건복지 기관에서 농업 활동을 재활 치료 프로그램으로 활용

-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 지방의 돌봄 농장, 아일랜드의 재활 치료 농장(therapeutic farm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 보건복지 관련 공공 기관이 돌봄을 목적으로 농업 활동 활용

■ 유형 2 : 고용

- 지적·신체적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 직업 연수생으로 임금 지급, 임금의 일부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특별 계약을 맺거나 세제 혜택 가능
-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social inclusion garden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 유형 3 : 교육

- 아동, 청소년 대상, 농장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 학습 장애 아동과 학교 생활 부적응자 참여 프로그램 등
- 프랑스의 교육 농장(ferme pédagogique), 독일의 학교농장(school farms)이 활성화.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사례

■ 기타

- 보건복지 또는 교육 관련 공공 기관이 직접 농장을 운영: 아일랜드 재활 치료 농장
- 가족 기반 실천 유형: 네덜란드, 벨기에의 돌봄 농장
- 돌봄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둔 전문 사회복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도 실천
-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운영 주체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실천 유형이 다양하며, ‘농복연계’(농업+복지)로 통칭. 주로 장애인, 고령자, 빈곤 계층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고용 및 사회 참여 독려, 농업법인, 일반 농가, NPO 법인, 사회복지 기관, 지방정부 참여

3. 사회적 농업 관련 정책

1) 국외

■ 이탈리아

- 1970년대까지 정부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지 못함
- 1978년 정신병원 폐쇄.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치료, 돌봄 서비스 책임을 주정부에 이양
- 그 과정에서 농촌지역이 방치되자 개인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농업 자원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시작
- 1990년 정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개념 탈피.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 방향 전환. 대다수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
-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 법 제정
- (1) 돌봄과 교육 서비스, (2) 농업 등 사업 안에 취약 계층 고용하는 노동 통합 형이 주를 이룸
- 구체적 활동 : (1)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이 관리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이용자가 대상. 농업 활용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으로 교육생으로 직업 교육 훈련 등. (3) 아동 돌봄이나 재소자 약물 중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 2015년 사회적 농업 사례 1,090개

[표 *]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ricoltura Capodarco)

로마 근교에 위치하며 1978년에 지역 내 장애인 복지 기관의 장애인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원은 농업인,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원예 치료사, 요리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전체 직원 수는 약 50명이다. 상주 직원이 10명이고 조합원은 38명이다.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등의 취약 계층도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취약 계층은 농사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이 있으면 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어 조합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직업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된다. 약 30명의 지역 내 청년 자원 봉사자들도 협동조합의 농업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한다. 농장 부지의 대부분은 국유지를 임차한 것이다. 일부 건물 및 토지는 지역의 수녀원에서 기부하였다. 농장은 채소와 과일을 주로 생산한다.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와인, 올리브 오일, 꿀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로마 시내와 농장에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게를 직접 운영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와인, 올리브 오일 등의 상품은 전문 중개인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판매한다.

고용된 약물 중독자,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취약 계층은 보통 농업 활동을 보조한다. 노동역량이 부족하거나 농업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일을 돕는다. 지역의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3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합원이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른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예, 미술, 음악, 동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발달 장애인,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합원인 정신과 의사 2명과 원예 치료사 1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2017

■ 네덜란드

- 1990년대 중반까지 민간농장에서 돌봄 서비스로 시작, 1990년 후반 확산
- 농업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큰 관심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 계층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폐쇄적인 기관에서 돌보던 것을 사회 통

최종보고회

합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려고 관심을 가지게 됨

-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증가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들 사이에 연결망(network) 형성
- 지금은 많은 농장들이 전문화되어 국가 보건복지 체계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전문화된 농장을 돌봄 농장이라 칭함
- 다양한 돌봄 농장이 존재하나 주로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지적·신체적 장애인, 정신질환자, 경증 치매 노인, 장기 실업자, 번아웃 증후군 환자,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등 서비스 대상 집단 다양

[표 *] 네덜란드 돌봄 농장: 파라다이스(Het Paradijs)

네덜란드 동부의 바르네벨트 근교에 위치. 2006년에 돌봄 농장으로 설립. 개인 소유의 민간 농장으로 처음에는 농장주와 부인 둘이서 시작하였다. 현재는 농업인, 사회복지사, 예술 치료사, 교육 전문가, 환경 교육 전문가, 간호사, 아동 상담사, 관계 치료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 23명이 있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한 인력이 전체 직원의 약 60%다.

소, 닭, 돼지, 말 등의 가축을 기르며, 고기와 달걀을 생산한다. 말은 자폐 아동의 승마 체험 활동에 사용된다. 채소와 과일을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계절과 상관없이 농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리 온실도 갖췄다. 농산물이 농장의 주요 수입원이다. 최근에는 돌봄 서비스 제공 단가가 떨어져 농업 활동의 비중을 높이려고 닭과 돼지의 숫자를 늘렸다.

돌봄 서비스 제공은 경증 치매 노인, 자폐 아동, 정신질환자, 번아웃 환자, 지적·지체 장애인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하루 평균 20~25명에게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중 90%는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제공한다.

경증 치매 노인들은 농장에 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농업 활동, 달걀 포장, 하이킹, 수공예, 목공 활동등에 참여한다. 간호사와 작업치료사가 보조한다. 접근성을 높이려고 농장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정신질환자와 번아웃 환자는 농업 활동, 농장 가게 운영 보조 등에 참여한다. 농업인, 사회복지사, 활동관리자, 간호사가 보조하며 개인별 대화 상담도 진행한다.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요일별,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물 돌보기, 원예 활동, 농업 활동 등에 참여하며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2017

■ 벨기에

- 플란더스 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취약 계층 고용이나 농업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옴
- 주로 소수의 인원에게 주간 보호 서비스 제공. 일과 시간에 농장 활동에 참여
- 장애 아동, 학습 장애 학생, 정신질환자 대상이 늘어났으며 이를 ‘녹색 돌봄’이라 부름
- 농장과 지역사회복지 기관이나 요양 시설 등 돌봄기관과 1:1 관계를 맺고 1~2명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보내고 농업 수행
- 돌봄 기관이 농장을 활용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2005년 정부 지원 시작 후 플란더스 녹색 돌봄 지원 센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참여 농가 급격히 증가
- 2016년 901호 농가 참여

[표 *] 벨기에 돌봄 농장: 후버 더 플루호(Hoeve de Ploeg)

1961년에 설립. 가족 기반의 낙농 농가. 농장 설립자의 아들, 딸, 사촌, 사위 등 9명이 시간제로 농장에서 일한다. 70헥타르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년 평균 45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한다. 치즈, 버터, 요구르트를 가공하여 농장 가게에서 판매한다. 원래는 낙농업에 종사하는 보통의 농장이었으나, 2006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돌봄 농장이 되었다. 농장이 위치한 지역의 돌봄 기관(The Institution Martine van Camp)이 먼저 농장에 접촉하였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장애 아동들이 농장에 와서 일과 시간 동안 일상적인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기관은 사례 농장과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장애 아동 2명을 농장에 보낸다. 1명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을 앓는 아동으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수요일에 나와 송아지를 관리한다. 또 다른 1명은 자폐 아동으로 화요일에 나와 농장 가게에서 판매할 상품을 준비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생 지원 센터(The Centre for Assistance to Pupils, CAP)와도 관계를 맺었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문제를 겪은 청소년 1명이 일주일에 3회 농장에 나와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2017

■ 일본

- 1990년대 장애인 및 일반인 대상으로 원예활동을 활용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 확산
- ‘원예요법’, ‘원예복지’라는 이름으로 관련 연구와 실천이 활발
-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 여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 2000년대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
- 2007년 농업법인 등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
- 2010년 이후 농촌 지역의 고령자,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농협, 사회복지기관, NPO법인, 일반 농가 등의 다양한 주체 참여
- 구체적 실천 : (1)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기관이 일반 농가나 농업 법인 등과 계약을 맺거나 직영을 통해 기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들을 농장에 고용 (2) 농업법인 등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헬로 워크)를 통해 장애인 고용 (3)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NPO법인 등이 농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노인들을 농업 활동에 참여. 자원봉사자로 참여 수당 지급

[표 *] 일본의 농업법인: ㈜사이타마훗코

사이타마훗코 농업법인은 1996년에 설립되었다. 8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약 6헥타르의 경지와 시설 하우스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1993년 지역의 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장애인들과 농업 활동을 지속해오다, 1996년 기관의 성격을 사회복지 기관에서 농업법인으로 전환하여 정식으로 장애인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였다. 현재 직원 중 2명이 장애인으로 모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 432㎡의 하우스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시작하였고, 점차 규모를 늘려 1,080㎡규모의 시설 하우스에서 각종 작물을 수경으로 재배하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리브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300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보유하고 있고,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올리브 오일이 이 법인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지역에서 고용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며, 파종, 제초 작업, 가지치기, 출하 준비 등의 다양한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2017

[표 2] 외국의 사회적 농장 지원 주요 정책

구분	내용		
	관련 법	주요 지원	주요 재원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법(1991) -사회적 농업법(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	
		고용취약계층의 임금 보조	
		교육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직업교육 참여수당 및 교육 운영비 지원	유럽 연합 사회 기금
		국유지 사용 우선권	-
		공공조달 및 공공일자리 선정 우선권	-
네덜란드	-장기요양법(2014) -사회지원법(2014) -청소년아동법(2014)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농업부, 보건복지부
		돌봄농업지원센터 운영(1999~2008)	
벨기에	-현금 급여 지급 관련 법령 제정(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농업부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지급	
		시설정비 비용 지원	
		플란더스녹색돌봄지원센터 운영(2004~)	5개 주 정부
일본	-장애인자립지원법(2006) -빈곤생활자 자립지원법(2015)	시설 정비 비용 지원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인력·기술 지원	
		장애인 직업교육 운영 예산 지원	
		공공 직업소개소(헬로워크) 운영	후생노동성
		고령자대상 사회적 농장 설립 지원	
		빈곤계층대상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2017

2) 국내

① 국내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

■ 경과

- 2018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개소당 60백만 원 지원, 5년간) 시작
- 2022년도까지 70개소로 확대 예정이며 힐링과 체험 부문을 포함하는 등 외연적 확대 목표 계획
- 거점농장 및 돌봄공동체 사업 등 농촌지역 복지 정책 확산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의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의 복지적 기능에 주목하여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2018년 10월)을 시범사업으로 시작으로 2019년 본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시행지침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농업이란 다음과 같음

■ 사회적 농업의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농업 생산 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지침 2페이지)

■ 취약계층의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 기회 등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지침 3페이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통해 돌봄, 치유, 일자리 창출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를 사회적기업과 같이 선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5년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18년도에 9개소, 2019년도 9개소가 선정되어 진행
-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장애인과 고령농은 물론 새롭게 농촌 지역에 들어온 귀농·귀촌인, 청소년 등이 있으며, 실제로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됨

②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세부 내용

■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사업규모 및 내용: 2019년도에는 시설비 지원이 추가됨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2019년 추가분)

[표 2]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특회계)	—	540	1,080	계속
국 고(70%)	—	378	756	계속
지방비(30%)	—	162	324	계속

■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19년도에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18년도 시범사업자

- '18년도 시범사업자(9개소)는 '18년도 사업을 보완하여 '19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19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경우 '19년도에도 지속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 강사비
 - 재료비
 - 시설사용료
 - 교통비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취약계층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취약계층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냉·난방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포함)
 - 취약계층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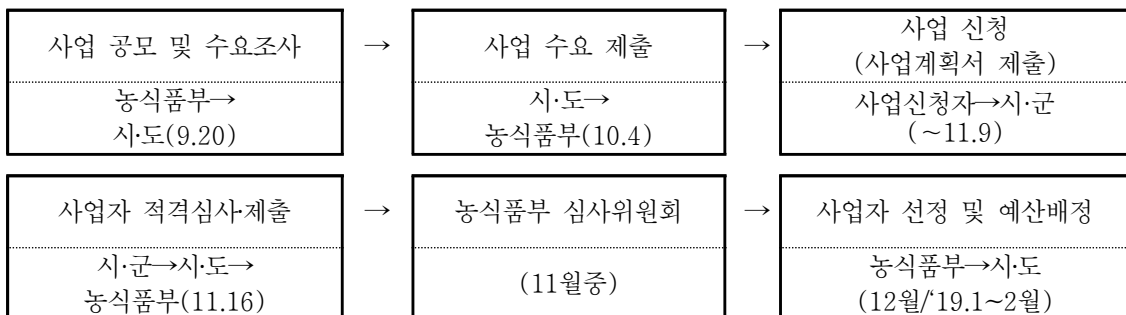
• 지원기간 : 1년

- 지원기간 :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19년도 신규신청자)



[표 6]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2018, 2019년)

선정연도	농장명	활동내용	지역
'18	농촌공동체연구소	지역학생의 농촌정착	충북 제천
	성원농장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충북 보은
	행복농장	장애인 재활 및 고용	충남 홍성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고령농 소득증진, 장애아동 재활, 청년농 육성	전북 완주
	무주팜앤씨티	장애아동의 재활	전북 무주
	선거웰빙푸드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자립	전북 임실
	여민동락	노인 일자리와 귀농인 정착	전남 영광
	야호해남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정착	전남 해남
	청송 해뜨는 농장	청년유입	경북 청송

선정연도	농장명	활동내용	지역
'19	황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청소년 농촌 체험교육	강원 횡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정신 장애인 재활	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주)닥나무와종이	청소년 체험 활동	충북 청주
	화답 영농조합법인	지적장애 학생 직업훈련	전남 나주
	항꾸네협동조합	청년 정착 지원	전남 곡성
	영농조합법인 수송대발효마을	장애인 건강·심리 지원	경남 거창
	식초마을영농조합법인	지적장애학생 직업훈련	세종
	농업회사법인(주)콩세알	고령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인천 강화
	금곡영농조합법인	정신 장애인 재활	울산 울주

제4장

사회적 농업 실태 분석: 기반 조성

1. 충남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 개요
2. 충남 사회적 농업 현장 조사 결과
3. 시사점

제4장 사회적 농업 실태분석: 기반조성

1. 충남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 개요

1) 전국 단위 선진 사례지 3개소

(1) 여민동락공동체(전남 영광)

■ 일시: 2019. 04. 11.(목)

■ 장소: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 인터뷰 대상: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 주요 내용

- 여민동락공동체의 공동 목표, 지향점
- 여민동락공동체 주요 프로그램
- 여민동락공동체 운영 방식 및 체계
- 사회적 농업 및 지역복지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여민동락공동체의 의의 및 시사점

(2) 행복농장

■ 일시: 2019. 07. 11.(목)

■ 장소: 충남 홍성군 행복농장, 젊은협업농장

■ 인터뷰 대상: 최정선 행복농장 이사

■ 주요 내용

- 행복농장 프로그램 운영 방식
- 차년도 사회적 복지 사업 운영 방안
- 농촌복지 및 사회적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
- 사회적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단계별 시스템 구축
-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패키지화

(3)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광역시)

■ 일시: 2019. 07. 05.(금)

■ 장소: 울산광역시 금곡영농조합법인

■ 인터뷰 대상: 한선연 사무장

■ 주요 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도시재생마을사업을 대두로 사회적 농업을 시작
- 체험에서 끝나는게 아닌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농업 지향
- 주간보호센터의 만성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
- 농한기를 활용한 마을밥상, 치매방지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운영
- 허브를 중심으로 재배하여 로컬푸드 및 농가직판매장을 통해 판매
- 양계, 허브 및 화훼 하우스, 요리프로그램 등 코스로 연결
- 지역의 농장 및 지역사회(장애인 주거시설 등)와 연계하여 운영

2) 충남 지역 사회적 농업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 6개소

(1) 충남 홍성군 꿈이자라는뜰

■ 일시: 2019. 04. 15.(월)

■ 장소: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 인터뷰 대상: 최문철 사무장

■ 주요 내용

-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꽃과 채소, 허브 중심으로 재배
- 마을의 다양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형 배움터와 일터로 활용
- 후원금을 통해서도 재정의 일정 부분이 충당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2) 아리랜드(충남 서천)

■ 일시: 2019. 08. 31.(토)

■ 장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아리랜드

■ 인터뷰 대상: 정의국 대표, 최순애 충남여성농업인센터장

■ 주요 내용

-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농업을 지향하는 마을 공동체 구축
- 서천군의 인재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 확대
- 서천군 청년농부멘토를 통한 청년농 발굴 양성에 힘쓰고 있음
- 정농회를 주관으로 정농유통 및 정농생협 설립
- 마을별 자치회를 통해 분과별로 의견을 공유·결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
- 추진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농장 및 기관의 연계 계획을 구상 중

(3) 청양푸드(충남 청양군)

■ 일시: 2019. 09. 24.(호)

■ 장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 인터뷰 대상: 복정한 대표

■ 주요 내용

- 청양군 발달장애인 부모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대상 문화복지사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농식품부 바른식생활 교육 강사 및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회원으로 활동
- 10년간 구기자, 작두콩, 전대, 더덕산나물 등과 토종 작물을 재배하며 친환경농업 실천

(4) (사)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일시: 2019. 09. 01.(일)

■ 장소: 충남 천안시 충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인터뷰 대상: 전재하 대표

■ 주요 내용

-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과 상시 직원이 필요
- 사업 내 청년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연계의 어려움
- 법인화 되지 않은 농장이나 단체의 경우 사업을 끌고 갈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관리나 운영의 어려움 발생
-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청년과 노인, 장애인 대상별 운영방식과 내용 체계화 필요
- 법인이나 비영리단체화를 통한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과 상시 직원시스템 확립

(5) 예산황새연합회(충남 예산군)

■ 일시: 2019. 06. 13.(목)

■ 장소: 충남 예산군 광시면

■ 인터뷰 대상: 서동진 대표

■ 주요 내용

- 2009년 황새복원사업지로 선정되면서 황새 서식지 조성을 위해 10여 년간 친환경 농업 실천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사체험교육 및 자연생태교육, 논 생물다양성 교육 등 실시 예정

(6) 영농조합법인 팍팍(충남 논산시)

■ 일시: 2019. 08. 30. (금)

최종보고회

■ 장소: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영농조합법인 팜팜㈜

■ 인터뷰 대상: 양광식 대표

■ 주요 내용

- 후계농으로 지역에서 20년간 농사
- 7,500평(2.5ha) 온실
- GAP 생산기반의 청과물 도소매 및 시설 원예 영농
- 신세계 푸드에 납품
- 청년층을 중심으로 종업원 8명, 외국인노동자 20여명 규모
-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거점기반 조성 및 휠체어 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업 구상 중

3)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1) 충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

■ 일시: 2019. 07. 26.(금)

■ 장소: 충남 홍성군 오누이권역

■ 인터뷰 대상: 구자인 센터장

■ 주요 내용

-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 사업의 행정 범위
- 사회적 농업 사업비의 지급 방식
- 사회적 농업 사업의 공모방식
- 사회적 농업 사업의 대상 및 내용
- 사회적 농업의 모델 제시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 일시: 2019. 07. 26.(금)
- 장소: 충남 홍성군 오누이권역
- 인터뷰 대상: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주요 내용
 - 사회적 농업 사업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 분배
 -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사회적 농업 확대를 위한 준비 및 구상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및 연계 방향

(3) 젊은협업농장(충남 홍성)

- 장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젊은협업농장
- 인터뷰 대상: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이사
- 주요 내용
 - 충남형 사회적 농업의 방향
 - 공유농촌자원의 범위(농지, 농기계 등)
 - 농업위원회 구성 방향

2.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 결과 1: 전국 단위 선진 사례지

1)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2018년 국비사업 선정지)

- 개요
 - 소개: 공경과 나눔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길벗이 되고자 하는 농촌복지 공동체,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와 경제의 복원과 부흥을 위한 통합적 생활 공동체

최종보고회

- 위치: 전남 영광군 묘량면
- 시설: 사회적 농업 시설 하우스 외에 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 동락점빵, 사무실
- 사회적활동: 주민들에 의한 운영, 마을 리더의 참여
 -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발굴: 모싯잎 송편 떡공장, 모싯잎·동부콩 작목반 → 야생화 하우스 생산 (사회적 농업 사업 대상으로 선정, 2018년)
 - 품앗이 학교: 농번기에 농사짓지 않는 어르신 대상으로 공동취사
 - 장암산 마을학교: 농한기 농사짓는 어르신 대상으로 문화·취미생활 제공
 - 동락점빵(이동식 점빵): 사회서비스형 유통사업단

■ 대상: 노인층

■ 애로사항: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대한 고민



[그림 6]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전경

■ 여민동락공동체 설립 단계별 구상

- 시작 : 노인복지 문제에 접근하자(2007년)
- 1단계 : 지역조사
 -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128명 정보 획득
- 2단계 : 지역 노인층의 분류
 -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돌봄활동 시작
 -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 3단계 : 본격적인 지역복지활동
 - 시설복지로 해결이 안된다!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활동
 - 농촌+ 재생, 복원 농촌살리기 지역복지

■ 동락점빵

- 언제: 2011년 마을프로그램 시작
- 왜: 구멍가게 사라져 읍에서 구매하게 되어 생필품을 팔자는 취지 아래 시작 (구매난민)
- 어떻게: 행안부 마을기업사업으로 등록, 사회서비스형 사업(기준, 보육, 요양, 양육-유치원, 요양원)
- 무엇을: 이동형 차량, 탐차 운행
- 42개 자연마을 주 2회 방문(목요일, 금요일) 9~4시
- 누가: 2014년 사회적협동조합 등록, 420명, 330세대 참여
- 이익: 연 12억 매출, 10% 순잉여금
- 앞으로도 현안을 마을 수익으로 풀어가자는 원칙

■ 여민동락공동체의 목표

- 일상적인 활동을 통한 조절, 연계
- 사회적 관계성의 회복
- 지역리더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 농촌 사회적공동체의 기능과 역할

- 지역의 활력도가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는 젊은 사람의 비율임. 여민동락은 기초 거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임
- 깨움마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귀농귀촌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추후 학연이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노인의 4대 욕구로는 1. 질병(건강) 2.빈곤(경제) 3.무의(심심함) 4.고독을 들수

있음. 이중에서 무의와 고독은 농촌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 나타남

- 품앗이학교, 장암산마을학교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 독려. 여민동락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거점경로당 지정·운영을 통한 노인공동체 지속 노력과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연계

- 무의고독 상태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함
- 지역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조망하고, 조율하고, 필요한 것을 연계해 주는 조직이 필요함
 - 종합복지관 역할을 해줄 만한 조직이 면 하나에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에서 하고 행정에서 못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지역 조직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물망이 필요
- 먼저, 지역조사를 통해 도대체 어떤 어르신들이 살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마을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
- 지역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역에 맞는 연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를 구축하여야 함
-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여민동락공동체가 일종의 종합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노인 케어시스템 등을 연계하도록 함
 -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재가노인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가 필요

2) 충남 홍성군 행복농장(2018년 국비사업 선정지)

■ 개요

- 소개: 만성정신질환자, 장애인, 취약계층을 돌보고 재활에 힘쓰는 사회적 농장
- 위치: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2구 소재

- 규모: 시설하우스 250평 4개, 총 1,000평(3개동 작물재배, 1개동 휴식공간, 작업대, 육묘장)
- 종사자: 스태프 3명, 자연구시 참가자 중 고용 1명(2019년 현재)
- 생산작목: 허브(애플민트, 와일드루꼴라, 바질), 상추, 할라피뇨, 꽃모종, 녹비작물 등
- 유통판로: 허브가공, 직거래,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지역장터 등

■ 대상: 만성정신질환자, 장애인

■ 애로사항: 상근 종사자 부족



출처: 세계타임즈(좌), 행복농장(우)

[그림 6] 충남 홍성군 행복농장 전경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자연구시> 2차 운영
-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돌보는 농부학교> 연중 운영
- 지역 학교 특수학급 아동청소년 대상 농업 교육 <꼬마농부학교>연중 운영
- 돌봄농업 연속세미나 <장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책자 발간
- 커뮤니티 케어(장곡면 도산리)
-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축: 국제정신건강학술대회, 홍보부스 참가 등

■ 다양한 사회적 농업프로그램을 통한 균형(밸런스) 유지

- 농업에만 치우치면 흥미가 떨어지니 루꼴라피자만들기, 원예치료의 일환으로 잔

다인형만들기, 꽃 압화, 화분만들기 등 중간중간에 넣어 밸런스를 맞추면서 흥미를 높여주는 양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들이 농장일보다는 부엌에서 만들어서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모이는 것에 의의를 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복지를 위한 연계시스템

- 돌봄마을처럼 마을을 포함한 인근지역 케어시스템을 시도해 보고, 돌봄마을사업을 확대한 거점농장과 참여농장의 형태로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것으로 예상됨
- 돌봄마을사업의 경우, 현재는 농장단위로 지정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을단위 안에서의 돌봄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외부인들이 유입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 우선은 마을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야 하고, 시설을 통한 외부사람들은 급작스러운 유입은 지양해야 함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사업”의 연계 및 협업 방안 모색을 통해 사회적 농업 강화 개설(대상자 선정)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 해야함
 -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협업하여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농촌복지는 농업과 연계하여 운행하는 것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음
- 고령농, 장애, 치매 등은 위치상으로 열악한 경계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시설과 기능을 경계지역 교집합 부분에 설치하여 현실을 고려한 복지시설 운영을 제안함

■ 사회적 농업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 농업 전국단위 협의체를 올해부터는 돌봄·장애·청년교육 분야별로 분리하여 만나기로 하였음
- 주체별 역할 매뉴얼의 마련 필요성과 통합적인 토론회 자리 마련이 필요함. 설명회(시범사업 준비) 차원으로 시작하여 협의체&협의기구 구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사전 전체 워크숍 및 세분화된 분야별 모임(협의체 모임)을 꾸준히 운영하여 사회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야 함

3) 울산광역시 금곡영농조합법인(2019년 국비사업 선정지)

■ 일자리창출로 연계되는 사회적 농업 지향

-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도시재생마을사업 참여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였음
- 현재 참여자들의 인식은 ‘즐거움’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 단발성 체험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활동의 지속성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적 농업을 지향함
- 체험쪽 활동을 축소하고, 교육, 돌봄, 일자리창출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농업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임



[그림 6] 울산광역시 금곡영농조합법인 전경

■ 지역의 돌봄과 공동체 역할 선도

- 현재 주간보호센터의 만성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
 - 3개의 센터에서 15명~20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오는데, 1:1 봉사자들이 붙다 보니 인원이 많고 날씨가 겹치면 곤란한 경우 발생
- 농한기를 활용한 마을밥상, 치매방지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운영
- 허브를 중심으로 재배하여 로컬푸드 및 농가직판매장을 통해 판매
 - 양계, 허브 및 화훼 하우스, 요리프로그램 등 코스로 연결
- 농수산대학 졸업자를 팀장으로 영입하여 농업활동과 연계하여 활용

■ 지역의 농장 및 지역사회(장애인 주거시설 등)와 연계하여 운영

- 주변 농장을 활용한 다양한 농산물 작목체험 운영
-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한 사회적 농업 방향 설정

최종보고회

- 현재 3개의 농장과 연합하여 사회적농장 진입을 위한 협의 진행중(교육, 워크숍 등 공동 참여)
- 지역의 기업인(현대자동차)들과 함께 팜투어 진행

2.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 2: 충남지역 사회적 농업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 6개소

1) 충남 홍성군 꿈이자라는뜰

■ 위치: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래리

- 소개: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해 온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형 배움터와 일터
 - 꿈이자라는뜰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농사 일을 통해 건강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특수교사와 마을 주민교사가 협력하여, 유기농업에 생태교육과 직업교육을 엮은 '전인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마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관계 맺고, 자기 자리를 찾아, 제 몫의 일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움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꿈꿉니다. 장애는 더불어 사는 마을의 꽃입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 특수교사 : 홍동초 홍화숙 김경희, 홍동중 박신자 최성준 박영신, 풀무고 조한영, 홍북초 김성애
 - 마을교사 : 이담(초등), 유미나(초등), 최문철(중등/고등/홍북초)
 - 농장일꾼 : 가이(최형욱), 노래(이담), 보루(최문철), 비빔(신나영), 베짚(박병관), 양꼬(유미나), 팽팽(강혁준)
 - 학생 : 홍동초 6명, 홍동중 7명, 풀무고 2명, 홍북초 5명 + 홍동중 7명
- 재배작목: 꽃과 채소 모종(마을장터에서 판매), 허브차와 허브솔트, 땀수건(풀무학교생협에 판매)
- 재정현황: 590만원 수입, 5개의 텃밭수업 손님맞이와 외부 강의를 진행 1,430만원 마련, 1,850만원 재정후원(2018년 기준)

■ 대상: 발달장애 청소년

■ 애로사항: 농지 확보가 힘들어 이번에도 새롭게 이주한 상태

■ 꿈뜰 프로그램

- 텃밭농사/기록농사(발달장애 청소년과 특수교사가 함께하는)
- 다큐멘터리 상영 및 시청
- 캠핑데이(홍동초중 친구들과 농장 스테이)
- “뭐라도 계속 해보자!” 프로젝트(주제 발표)
-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발표회” 개최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돌봄농장



출처: 꿈이자라는뜰 내부 자료(상), 직접 촬영(하)
[그림 6] 충남 홍성군 꿈이자라는뜰 전경

2) 충남 서천군 아리랜드

■ 위치: 충남 서천군 마서면

■ 생명농업으로부터 시작된 마을 공동체

- 토양을 살리는 생명농업을 지향하면서 정농회를 통해 활동을 시작함
-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로 마을 공동체 구축함
 -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 지향하였으나 실패
 - 영농조합법인 열린터 개설하여 된장, 간장, 죽염을 생산
- 책임의 소재가 없고, 지속성이 없는 공동체의 한계에 도달함
- 아미씨 공동체를 표본으로 돈이 우선이 아닌 재미있는 농사, 아름다운 농사를 지향
- 5천평 정도의 토지에 치유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농장프로그램 운영



[그림 6] 충남 서천군 아리랜드 전경

■ 서천군의 인재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 확대

- 서천군 청년농부멘토를 통한 청년농 발굴 양성에 힘쓰고 있음
- 서천군에서의 세계적인 축제 개최보다 세계적인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 아카데미를 통한 음악과 문화 전파
- 정농회를 통한 건강교실 운영

■ 마을별 자치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추진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농장 및 기관의 연계 계획을 구상중임
 - 지역 내 농장과 장애인협회,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은 기관을 연계하여 3~4 군데를 매칭하여 연계
 - 4개의 분과정도를 두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
 - 추진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려고 구상
- 마서면 37개의 마을에서 20여명이 마을 자치회 위원으로 참여
 - 마서면의 자치위원장이 면장역할을 함
 - 분과별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공모, 행정 등 자치적으로 처리

3) 충남 청양군 청양푸드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그림 6] 충남 청양군 청양푸드 전경

■ 청양군 발달장애인 부모회 활동

- 청양군 발달장애인 부모회 임원 활동하며 장애인 대상 문화복지사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해 왔음
- 청양군 발달장애인 부모회와 2019년 고추, 구기자 축제장에서 판매할 구기자, 식혜를 아이들과 민들어 보고 판매도 참여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사회공헌을 하였음
- 농식품부 바른식생활 교육 강사로 활동해왔으며,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활동으로 토종옥수수 모종만들기 및 토종옥수수 팝콘만들기 체험 및 시식을 통해 토종 먹거리의 중요성 교육을 진행해 옴

■ 친환경농업과 토종 작물 재배

- 지난 10년간 구기자, 작두콩, 전대, 더덕산나물 등과 토종 작물을 재배하며 친환경농업 실천
- 충청남도 품목별 연합회 활동을 해 왔으며, 체험연구회가 주최하는 화합 한마당에서 청양군 대표로 출전하여 토종씨앗 전시 및 토종옥수수 팝콘체험과 시식 행사를 하기도 함
- 토종 옥수수 종자 무료 나눔을 실시하여 토종종자 보급에 기여하는 한편, 토종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노력해 옴

■ 지역과 함께한 다양한 활동들

-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농부밥상 앞 화단을 토종텃밭을 조성하는 등 지역먹거리 운동에 참여해 옴
-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들과 함께 들깨밭을 조성하여 판매 수익금을 독거노인에게 생활용품으로 공급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해 옴

4) 충남 천안시 (사)충남 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위치: 충남 천안시 성환읍

■ 장애인단체의 사회적기업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족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 체계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시급함
 - 장애인단체는 후원금을 받아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을 잘 아는 실무자가 운영해야함
 - 노인과는 달리 장애인에게는 커뮤니티케어가 쉽지 않음
- 자기 대변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 충남장애인부모회가 형성되어 운영
 - 주간활동사업을 성인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자리문제 해결과 공동화 마을, 체험마을 등을 통한 공동생활을 지향

- 천안에는 발달장애인이 2,600명 존재하는데, 그 중 500~1,000명은 별다른 활동 없이 집에만 있는 사각지대에 있음
- 시군에서 공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보호작업장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함

■ 사업 내 청년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연계의 어려움

- 사업 내 청년, 노인, 장애인 세 개의 영역에 대한 분리가 필요함
 - 관공서나 정부쪽에서도 장애인 업무와 청년 업무를 구분하니 화합이 불가하다고 생각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음
- 개인농장이나 개인단체는 담당자가 없어 관리가 어려움
 - 법인화 되지 않은 농장이나 단체의 경우 사업을 끌고 갈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관리나 운영의 어려움 발생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방향

-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청년과 노인, 장애인 대상별 운영방식과 내용 체계화 필요
- 돌봄과 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 확립 필요
- 운영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 마련 필요
- 법인이나 비영리단체화를 통한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과 상시 직원시스템 확립
 - 사업계획서나 서류작성을 장애인이 담당할 수 없기에 상시 직원이 필요
- 장기적이고 특화된 사회적기업 사업 운영이 필요
-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 청년, 장애인을 하나로 이루어 사업을 운영했으면 함.
 - 인식개선과 돌봄의 기회 필요
 - 규제의 개선을 통한 농업과 청년, 장애인과의 화합 기대
-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 운영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스템 필요
- 1차 산업에서 6차산업, 판매까지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시스템 마련
-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확대 지원과 일자리 창출 계획

5) 충남 예산군 예산황새연합회

■ 위치: 충남 예산군 광시면

■ 황새복원사업지 선정과 친환경농업

- 황새복원사업지로 선정되면서 황새 서식지 조성을 위해 10여 년간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옴
- 하지만 국내 친환경농업 자체의 침체와 마을 내 고령화 문제 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매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는 감고하고 있음



[그림 6] 충남 예산군 황새마을 전경

■ 황새 서식지 조성 and 친환경농업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도전

- 황새 서식지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이 지향하는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과 생태계, 농촌생활을 공유하는 ‘교육’적인 측면의 사회적 농업 실천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음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사체험교육 및 자연생태교육, 논 생물다양성 교육 등 실시 예정
- 사회적 농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계기로 지역의 고령농가와 여성농업인, 귀농 귀촌인이 함께 마을의 활력을 북돋아주고, 지역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6) 충남 논산시 (주)영농조합법인 팜팜

■ 위치: 충남 논산시 광석면

■ 후계농으로 지역에 남아 20년간 농사

- 7,500평(2.5ha) 온실에서 GAP 생산기반의 청과물 도소매 및 시설 원예 영농을 해옴
- 신세계 푸드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생산량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
- 청년층을 중심으로 종업원 8명, 외국인 노동자 20여명 규모



[그림 6] 충남 논산시 영농조합법인 팜팜 전경

■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거점기반 조성 및 휠체어 장애인 대상 사회적 농업 구상 중

- 현재 새로운 농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스마트팜이 가진 최신식 시설의 장점을 살려 휠체어 장애인이 방문할 수 있는 딸기 농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더불어 지금까지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을 육성해 온 경험과 현재 많은 외국인 종사자들과 함께해 온 경험을 살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4. 충남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1)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

■ 읍면 단위별 모델링 제시

-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 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신청하는데, 특정 읍면을 지정해서 읍면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시군모델로 더 좋다고 생각함
 - 신청의 주체를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가 연계해서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을 연계하는 면단위 모델을 설립하여 선정
 - 공모형식을 통해 한 개의 면에다가 배치하여 면사무소와 주민자치회를 통해 관리하는 면단위 모델 지향
- 시군전체를 보자면 도저히 관리 인력이 안되니 추진주체를 면단위 모델로 하고, 면에 TF팀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밑에 4개 분과가 있는데, 교육+ 복지+ 환경+ 경제로 구성되어 있음. 농업쪽은 없으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산하의 TF팀 형식으로 전담조직을 구성
 -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이 업무의 전담자를 지정운영 해야 함. 이런 것을 공모사업 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함
- 따로 놀던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과 지역복지의 융·복합

- 사회적 농업 사업비를 개별농장에게 주는 것은 위험함. 사회적 농업이 자력할 수 있는 생태계는 지역복지와 강력하게 연계되어야 함. 따라서 충남형은 처음부터 사회적 농업과지역복지를 묶어주는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함
-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 하는 사람들을 연계하는 연구회 같은 것들이 필요함
 - 홍성통처럼 모여서 각각이 가진 예산이나 사업을 드러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 볼 것인가 하는 연계모델이 필요
- 사회적 농업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서 면에서 사회적 농업 설치 농장을 발굴하고, 주민자치회 내에서 코디네이터를 관리·배치할 조직을 선정하여야함

-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남형 모델로써 지역복지와 강력하게 결합하여 지역복지의 자원과 인력, 사업 등을 연계하는 모델로 먼 단위를 중심으로 체계를 잡아 설계해야 함
-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개념이 정의가 되고 있는데,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현재의 돌봄, 치유로만 보기에 범위가 너무 좁고, 농업의 사회적 기능만을 중점으로 둔 개념임. 농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을 모두 고려한 용어 설정 필요

■ 경쟁공모를 통한 모델링

- 사업 공모방식은 공문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을 지양하고, 경쟁공모를 통해 설명회 겸 최소 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이수하도록 해야 함
- 공모사업 시, 도시형 모델과 농촌형 모델 두 가지를 공모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음
- 도시형 모델의 경우 누가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특정한 동단위의 주민자치회 산하의 문화복지 분과와 농촌 쪽의 주민자치회의 농업분과가 만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가야한다는 개념으로 제안할 수 있음
- 도 단위에서는 힘들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중간에 도농교류차원에서 활동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 사회적 농업으로의 접근을 위한 역할

- 사회적 농업에 생각이 있는 농장들의 사전 실천프로그램 체험이 필요함. 몇 차례 운영을 통해 경험 후 농림부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진단하여 지원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주민 내에서의 활동가 창출사업을 통해 사업 및 활동기획, 교육 등 담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 조례에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중간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여러 기관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그 인건비를 군수가(또는 도가) 지원하는 방식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사회적 농업을 국가(농림부)에서 지정하는데, 충남에서 또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현재도 농림부가 보조금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사회적 농업을 논의할 만한 모임 형태를 일단 구축하고, 협의체든 중간지원방식으로 확대하여 가야함
- 강의식교육과 주기적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 필요함
 - 코디네이터, 기획자, 각종 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내포
- 타분야와 계속 만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임.
 - 서로 다른 분야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의 문제(ex. 보건소계통, 교육계통)
- 충남도 수준에서 현재 있는 센터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의 주요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
 - 기획능력이 있는 사람, 사람들 연결하고 거강꾼 노릇하는 사람, 돌봄 농업 같은 경우 사례관리 하는 사람 등의 기능 중심으로 구성

3) 충남 홍성 젊은협업농장

■ 충남형 사회적 농업의 방향

- 시군에 사전 담당자 교육(워크숍)을 통해 관련 유관기관 및 부처의 융합사업 형식으로 충남형 사회적 농업 농장 지정이 필요함
- 충남형 사회적 농업은 면단위의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과 결합해서 한다는 것에 차별점을 두어야 함
 - 농장지정+ 시범사업비+ 초기 1~2년 시설지원사업 지원하는 방식
- 사회적 농업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시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시군별 지자체의 내부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농촌을 담당하는 과가 없는 경우 협의회를 구성시켜 동아리 비용으로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적 농업 사업은 패키지로 들어가야 함

■ 공유 농촌자원에 대한 이해

- 농촌형 공유 차량: 집집마다 차를 두 대씩 가지고 있는데 홍성읍에서 3명이 동으로 올 때 차 3대를 끌고오는 문제가 계속됨. 앱을 통해 어떻게 차량을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음
- 노인 문제와는 별개로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농업을 위해 행정리로 들어올 때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카나 쏘카 등 쓰다 버리는 차량을 활용하여 면소재지용 공유차량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음
-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센터를 운영중인데 너무 많은 농기계들이 한군데 집중되고 있고, 사용을 위해서는 먼 거리를 감수하고 빌려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농기계 임대 경쟁 강화와 반납의 문제가 있음
 - 공유농기계 사업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고장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필요
 - 협동조합을 통해 차량 정비 능력을 갖춘 귀농자를 활용한 차량 공동관리와 소유 기획

■ 공유 농지 이용을 위한 농업운영위원회 개설

- 공유농업을 위한 ‘농지’의 소유는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함
- 농업운영위원회를 면단위 차원에서 크게 만들어서 농업과 관련된 법인(협업농장, 농협 등)들이 들어와서 누가 농지를 산다고 했을 때, 농업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
 - 면단위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게 가장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업운영위원회로 상생하며 가되 지원해줄 수 있는 연구센터 필요
- 농업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그 단위에서 농업농촌 5개년 계획(농발계획)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음
 - 면단위 농발계획이 나오면 군단위 계획을, 그것을 모아서 도단위 농발계획이 나와서 농림부의 방향과 매칭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반대로 운영
- 농지법 개정이 아닌, 농지이용(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함
 - 농지문제를 개인에게 넘기니 농지문제가 계속 발생
- 일본은 주식회사가 농사를 짓는 농업법인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영농조합법인에

서 농사짓는 법인이 없음. 농사는 개별이 짓고, 유통·가공 등을 법인에서 하는 형식임. 농사법인을 만들어 농사짓는 것 자체를 법인화시켜야 함

4. 시사점: 충남 사회적 농업의 지원 방향성

1) 역할 및 방향

■ 사회적 농업으로의 접근을 위한 역할

- 사회적 농업 희망 농장의 사전 실천 프로그램 기회 필요. 사전 실천을 통해 향후 농림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진단하여 지원하도록 유도
- 사회복지사 등 코디네이터 역할 및 기능 필요
- 지역에서의 활동가 창출 사업을 통해 사업 및 활동기획, 교육 등 논의 필요

■ 충남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 조례를 통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 지정 및 위탁 기능 부여와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등 활동가 인건비 지원 방식 필요
- 농림부가 보조금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과 차별화하여 지역 단위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협의체나 중간지원방식으로 확대
- 강의식 교육과 주기적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사업 필요: 코디네이터, 기획자, 각종 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 내포
- 타분야를 연결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ex. 보건소, 교육 등)

2) 지역단위 논의 구조

■ 읍면 모델 필요

- 지역복지의 목적과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 모델 필요
- 신청의 주체를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가 연계한 형태
- 공모 형식을 통한 지역 사정을 반영한 지역 단위 자율 형태의 사업 지향

■ 추진 방법

-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복지+환경+경제 등 주요 분과 활용

- 분리되어 있는 복지 예산과 농업 예산의 통합 계기로 활용

3)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 융복합

■ 충남형 융복합적인 사회적 농업 개념 필요

-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개념의 정의에서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접근 필요
- 현재의 돌봄, 치유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농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을 모두 고려한 개념으로 확장 필요
- 충남형 사회적 농업은 자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사업비를 개별농장에게 주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복지와 강력하게 연계되어야 함

■ 사회적 농업과 지역복지와의 강력한 연계

- 처음부터 사회적 농업과 지역복지를 묶어주는 사업 모델 필요
- 지역복지의 자원과 인력, 사업 등을 연계하는 모델로 체계를 잡아 설계
-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 관계자들의 연구회 방식 필요

4) 사업 세부화

■ 패키지 방식

- 개별 지원 사업 형태가 아니라 패키지로 묶어서 지역단위 체계 마련사전 교육선행 프로그램컨설팅 방식으로 안정화
- 지역 단위로 사회적 농업 농장을 발굴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코디네이터를 관리·배치할 조직 선정
- 국비사업 지원 방식인 농장 단위 지원 사회적 농업 단점을 보완 체계 마련

■ 논의의 장 마련

- 주체별 역할 매뉴얼의 마련 필요성과 통합적인 토론 자리 마련 필요
- 설명회(시범사업 준비) 차원으로 시작하여 협의체 및 협의기구 구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사전 전체 워크숍 및 세분화된 분야별 모임(협의체 모임)을 꾸준히 운영하여 사회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

제5장

사회적 농업 수요 분석: 대상 분석

1. 충남 사회적 취약계층 수요 분석 개요
2. 충남 사회적 취약계층 수요 분석 현황
3. 시사점

제5장 사회적 농업 수요분석: 대상분석

1. 충남 사회적 취약계층 수요 분석 개요

1) 대상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약물 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등) 등 사회적으로 고용 기회 등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은 물론,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

- 장애인
- 고령자
- 아동 및 영유아
- 귀농·귀촌자
- 외국인주민
- 다문화가족
- 청년 및 청년농업인 등

2) 수요자 자료 수집 방식

■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실과(2국 2실 1관 10개팀) 자료 협조요청

-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 저출산보건복지실 보육지원팀
-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청년과 청년일자리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

■ 통계청 자료를 통한 수요자 현황 분석

2. 충남 사회적 취약계층 수요 분석 현황

1) 충남 시군별 농업 현황

■ 농가 및 농가인구

- 2018년 현재 충남의 농가는 123,480호로 전국 농가 1,177,318호의 10.5%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의 농업인은 276,426명으로 전국 농업인 1,501,064명의 18.4%를 차지
-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1.8%로 증가하고 있고, 충남의 농가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2.5%로 감소
- 농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3.6%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충남에서는 4.3%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 충남 시군별 농가 및 농가인구 분포(8개년)

단위 : 가구, 명, %

행정 구역별	2010		2018		농가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 (가구)	농가인구(명)	농가 (가구)	농가인구(명)		
전국	1,020,838	1,130,435	1,177,318	1,501,064	1.8%	3.6%
충청남도	151,424	394,324	123,480	276,426	-2.5%	-4.3%
천안시	12,406	36,774	11,477	27,799	-1.0%	-3.4%
공주시	12,089	31,577	9,554	22,287	-2.9%	-4.3%
보령시	9,006	22,632	8,098	17,542	-1.3%	-3.1%
아산시	10,499	30,019	8,835	20,971	-2.1%	-4.4%
서산시	13,320	33,778	9,833	21,375	-3.7%	-5.6%
논산시	11,925	31,185	10,466	22,903	-1.6%	-3.8%
계룡시	549	1,647	514	1,206	-0.8%	-3.8%
당진시	-	-	11,702	26,870	-	-
금산군	7,638	19,188	6,284	13,795	-2.4%	-4.0%
연기군	5,520	15,228	-	-	-	-
부여군	10,905	27,798	8,615	19,607	-2.9%	-4.3%
서천군	7,136	17,255	6,641	14,156	-0.9%	-2.4%
청양군	6,427	15,694	5,761	12,264	-1.4%	-3.0%
홍성군	11,082	28,274	8,411	17,289	-3.4%	-6.0%
예산군	11,118	28,280	9,896	22,629	-1.4%	-2.7%
태안군	8,315	19,266	7,393	15,733	-1.5%	-2.5%
당진군	13,489	35,729	-	-	-	-

자료 : 통계청(2018), 동림어업조사,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농가인구

■ 연령별 농가 분포

- 2015년 충남의 연령별 농가의 비율은 50대 이하가 전체의 7.8%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경우 92.2%를 차지
- 충남의 농가의 평균 연령은 무려 66.3세로 전국의 평균 연령 65.6세 보다 0.7세나 높게 나타나 충남 전체의 농업 부문에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

[표 *] 충남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세

행정 구역별	20~29	30~39	40~49	50~59	60~64	65~69	70~74	75~79	80세 이상	합계	경영 주 평균 연령
전국	792	13,574	84,025	246,824	161,298	170,860	165,210	152,166	93,769	1,088,518	65.6
충청 남도	89	1,452	8,813	28,450	19,204	21,158	20,128	19,301	13,413	132,008	66.3
천안시	9	131	1,041	3,239	1,894	1,750	1,468	1,293	826	11,651	63.9
공주시	5	117	720	2,458	1,502	1,545	1,431	1,337	1,036	10,151	65.7
보령시	5	80	520	1,741	1,283	1,439	1,423	1,296	859	8,646	66.7
아산시	8	109	713	2,144	1,410	1,459	1,360	1,395	865	9,463	65.8
서산시	4	130	758	2,469	1,677	1,989	1,981	1,862	1,359	12,229	66.9
논산시	10	150	727	2,457	1,600	1,677	1,576	1,400	975	10,572	65.6
계룡시	1	10	60	152	104	76	77	42	36	558	63.0
당진시	3	100	721	2,286	1,667	1,951	1,780	1,784	1,241	11,533	66.9
금산군	6	67	479	1,454	983	1,044	1,028	1,036	686	6,783	66.3
부여군	13	124	624	2,177	1,472	1,551	1,458	1,317	871	9,607	65.8
서천군	5	71	310	1,138	897	1,156	1,138	1,139	797	6,651	68.0
청양군	2	82	495	1,362	910	1,006	995	1,148	837	6,837	66.9
홍성군	9	122	689	1,908	1,312	1,535	1,472	1,442	1,139	9,628	66.7
예산군	3	101	631	2,169	1,504	1,653	1,527	1,650	1,076	10,314	66.7
태안군	6	58	325	1,296	989	1,327	1,414	1,160	810	7,385	67.9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자료 : 2015년 통계가 최신자료임

■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

- 2015년 충남의 경작규모별 농가의 비율은 경작규모 0.1ha 미만이 1.8%, 경작규모 0.1ha이상 1.0ha 이하 농가가 전체의 59.6%로 나타남
- 전국의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 비율은 30.9%이고, 충남의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는 37.8%로 충남지역에서 경작규모가 있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 충남 시군별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ha, 가구

	전국	충청 남도	천안 시	공주 시	보령 시	아산 시	당진 시	금산 군	부여 군	서천 군	청양 군	홍성 군	예산 군	태안 군
경지 없음	10,478	1,183	165	134	54	90	106	31	83	36	35	140	104	10
0.1ha 미만	21,932	2,367	210	217	160	160	165	204	174	106	140	245	183	87
0.1~ 0.2	164,074	15,025	1,636	1,189	1,217	1,062	975	1,215	814	1,016	907	1,067	861	676
0.2~ 0.3	105,944	10,427	1,197	933	757	798	683	865	540	521	503	748	670	482
0.3~ 0.5	194,284	20,674	2,238	1,853	1,429	1,540	1,526	1,488	1,317	1,005	858	1,445	1,431	1,043
0.5~ 0.7	124,663	15,241	1,516	1,323	1,021	1,118	1,180	909	1,019	647	700	1,157	1,180	814
0.7~ 1.0	130,702	17,253	1,487	1,407	1,037	1,241	1,492	799	1,270	799	867	1,370	1,421	964
1.0~ 1.5	113,819	16,690	1,261	1,158	1,018	1,196	1,461	569	1,243	775	902	1,361	1,544	1,063
1.5~ 2.0	71,292	10,301	741	638	574	754	1,099	280	817	472	575	751	1,028	664
2.0~ 2.5	36,387	5,469	347	314	310	388	606	135	472	244	332	378	480	390
2.5~ 3.0	26,248	3,936	224	226	248	283	455	79	399	180	225	249	396	285
3.0~ 4.0	32,891	4,849	248	270	291	337	595	86	485	239	283	293	470	331
4.0~ 5.0	16,439	2,495	130	154	149	165	302	40	291	136	185	127	173	179
5.0~ 6.0	9,788	1,535	54	89	96	85	213	20	192	93	106	88	100	114
6.0~ 7.0	8,347	1,321	71	66	93	88	192	29	133	86	75	69	87	84
7.0~ 10.0	10,979	1,626	72	104	91	89	241	11	192	110	86	72	105	102
10.0h a 이상	10,251	1,616	54	76	101	69	242	23	166	186	58	68	81	97
합계	1,088,518	132,008	11,651	10,151	8,646	9,463	11,533	6,783	9,607	6,651	6,837	9,628	10,314	7,385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자료 : 2015년 통계가 최신자료임

■ 주민자치회 분포

- 시군의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읍·면·동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자치회의 경우 자발적 성격이 강한 주민자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
- 효율적인 지역복지 정책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자발성이 강한 주민자치회 위주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표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특성 비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근 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별 사무 ▶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형 태	▶ 읍·면·동 자문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인 원	▶ 25명 이내 구성	▶ 30~50명 이내 자율결정
위원임기	▶ 시·군 조례, 연임규정 없음 ※ 14개 시·군 2년, 당진 1년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선정방법	▶ 읍면동장 위촉 - 읍면동 소재 통·리장, 기관·사회단체 추천 - 공개모집	▶ 시장·군수 주관 - 대표 위원별 정수 결정, 위원 선정 등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공개 추천제* 등 자율적 운영 * 공개 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천
대 표 성	▶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기 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 주민총회(연1회, 주요사업계획 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재 정	▶ 자체재원(수강료 등), 시·군 지원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주민세 등 다양
지자체와 관계	▶ 대부분 읍면동 주도 운영 - 행정 자문기구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자료 : 충남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내부자료

- 충남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는 40개소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역이 26개소, 충남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역이 19개소임
- 행정안전부 : 전국 214개, 도 26개
 - ('13년) 전국 31, 도 4<천안 원성1동, 논산 벌곡면, 아산 탕정면, 예산 대흥면>
 - ('15년) 전국 16, 도 1<아산 배방읍>
 - ('19년) 전국 167, 도 21

최종보고회

• 충남도 : 19개

- ('13년) 행안부 최종 미 선정 3개소(공주 반포면, 부여 초촌면, 서천 서면) ※ 별도 도비 지원
- ('18년) 7개(천안 성정1동, 서산 대산읍, 부여 외산면, 서천 마산면, 청양 청양읍, 예산 예산읍, 태안 원북면)
- ('19년) 9개(천안 풍세면, 성환읍, 백석동, 서산 부석면, 금산 추부면, 부여 홍산면, 서천 장항읍, 비인면, 홍성 홍동면)

[표 *] 충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연 번	시·군	읍·면·동	비 고	연 번	시·군	읍·면·동	비 고
1	천안 (5)	원성1동	('13년) 안행부	21	당진 (14)	우강면	('19년) 행안부
2		성정1동	('18년) 충남도 (19년) 행안부	22		신평면	('19년) 행안부
3		풍세면	('19년) 충남도	23		송산면	('19년) 행안부
4		성환읍	('19년) 충남도	24		당진1동	('19년) 행안부
5		백석동	('19년) 충남도	25		당진2동	('19년) 행안부
6	공주 (1)	반포면	('13년) 충남도 (19년) 행안부	26	금산 (1) 부여 (3)	당진3동	('19년) 행안부
7	아산 (3)	탕정면	('13년) 안행부	27		추부면	('19년) 충남도 (19년) 행안부
8		배방읍	('15년) 행자부	28		초촌면	('13년) 충남도
9		온양6동	('19년) 행안부	29		외산면	('18년) 충남도
10	서산 (2)	대산읍	('18년) 충남도	30		홍산면	('19년) 충남도
11		부석면	('19년) 충남도 (19년) 행안부	31	서천 (4)	서 면	('13년) 충남도
12	논산 (1)	벌곡면	('13년) 안행부	32		마산면	('18년) 충남도
13	당진 (14)	합덕읍	('19년) 행안부	33		장항읍	('19년) 충남도
14		송악읍	('19년) 행안부	34	청양 (1)	비인면	('19년) 충남도
15		고대면	('19년) 행안부	35		청양읍	('18년) 충남도
16		석문면	('19년) 행안부	36	홍성 (1)	홍동면	('19년) 충남도
17		대호지면	('19년) 행안부	37	예산 (3)	대흥면	('13년) 안행부
18		정미면	('19년) 행안부	38		예산읍	('18년) 충남도 (19년) 행안부
19		면천면	('19년) 행안부	39	태안 (1)	덕산면	('19년) 행안부
20		순성면	('19년) 행안부	40		원북면	('18년) 충남도

자료 : 충남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내부자료

2) 취약계층 대상자별 현황

■ 귀농귀촌인구

- 충남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가구원을 포함한 귀촌인구는 439,535명으로 2014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가구원을 포함한 귀농인구는 17,976명으로 2014년 대비 32.9% 감소하였음¹⁾

[표 *] 충남 귀농귀촌 인구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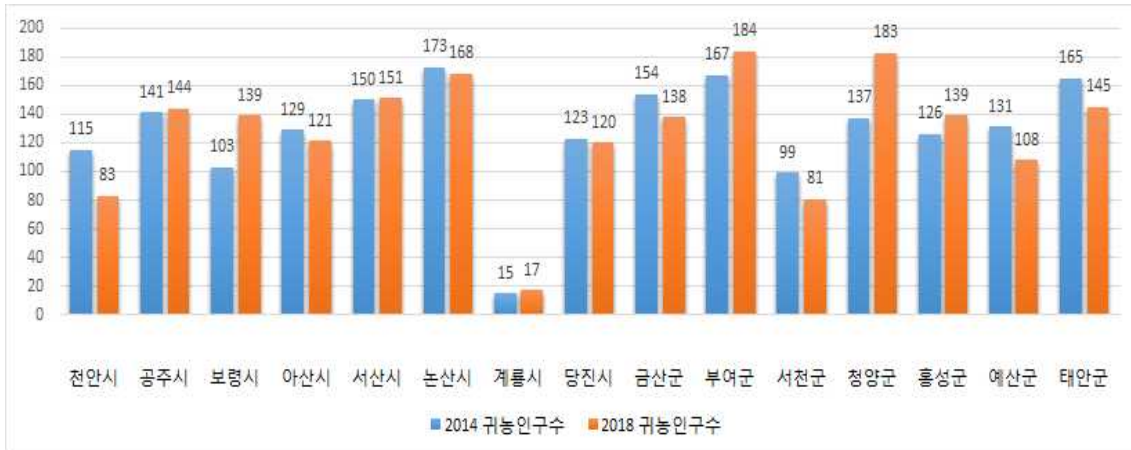
구 분	'14년 (A)	'15년	'16년	'17년	'18년 (B)	증감 (B-A)
귀농·귀촌인구	457,511	486,638	496,048	516,817	484,529	5.9%
귀농인구	17,976	19,860	20,559	19,630	12,055	-32.9%
귀촌인구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7.5%

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

- 충청남도의 귀농인구는 2014년 1,928명에서 2018년 1,921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충남 시군별로는 2018년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여군(184명), 청양군(183명), 논산시(168명) 순이었음. 귀농귀촌 정의 변경 전 자료를 활용한 2014년에는 논산시(173명), 부여군(167명), 태안군(165명)의 순으로 나타남

1) 우선 귀농귀촌 정의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 이하 귀농어귀촌법)하면서 귀농과 귀촌 정의를 수정하게 된다.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이외에 농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를 '귀촌인'으로 정하고 있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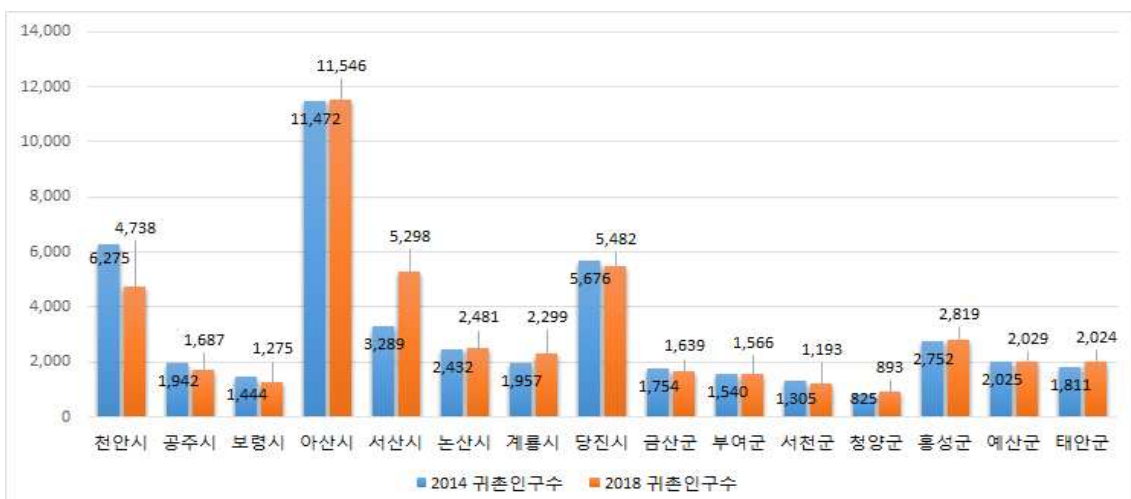


자료 : 김기홍(2018), 귀농귀촌 개념과 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28(2)

[그림 *] 충남 시군별 귀농 인구 추이

- ‘귀촌’에 대한 정의는 2017년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던 것에서 ‘귀농’을 제외하고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음. 2014년은 귀촌 정의 변경 전 자료를, 2018년은 귀촌 정의 변경 후 자료를 사용하여 귀촌 정의 변경에 따른 시군별 현황을 살펴봄
- 2014년 귀촌 가구는 아산시(11,472명), 천안시(6,275명), 당진시(5,676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아산시(11,546명), 당진시(5,482명), 서산시(5,298명)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자료 : 자료 : 김기홍(2018), 귀농귀촌 개념과 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28(2)

[그림 *] 충남 시군별 귀촌 인구 추이

■ 청년 및 청년농업인

- 2019년 현재 충청남도의 18~34세 청년인구는 418,868명으로 충남도 전체 인구 대비 19.7% 차지함
- 충남 시군별로는 천안시(160,562명), 아산시(64,818명), 서산시(33,532명) 순으로 청년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 충남 청년인구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계		남		여	
	인구수 (18-34세)	도 전체 인구 대비 (도 청년 인구 대비)	인구수	성별	인구수	성별
합계	418,868	19.7%(100%)	227,275	54.3%	191,593	45.7%
천안시	160,562	7.6%(38.3%)	84,179	52.4%	76,383	47.6%
공주시	19,110	0.9%(4.6%)	10,455	54.7%	8,655	45.3%
보령시	16,320	0.8%(3.9%)	9,205	56.4%	7,115	43.6%
아산시	64,818	3.1%(15.5%)	34,960	53.9%	29,858	46.1%
서산시	33,532	1.6%(8.0%)	19,098	57.0%	14,434	43.0%
논산시	19,773	0.9%(4.7%)	10,820	54.7%	8,953	45.3%
계룡시	8,263	0.4%(2.0%)	4,424	53.5%	3,839	46.5%
당진시	30,854	1.5%(7.4%)	17,566	56.9%	13,288	43.1%
금산군	7,064	0.3%(1.7%)	3,925	55.6%	3,139	44.4%
부여군	9,373	0.4%(2.2%)	5,240	55.9%	4,133	44.1%
서천군	6,779	0.3%(1.6%)	3,866	57.0%	2,913	43.0%
청양군	4,574	0.2%(1.1%)	2,574	56.3%	2,000	43.7%
홍성군	17,133	0.8%(4.1%)	9,244	54.0%	7,889	46.0%
예산군	11,734	0.6%(2.8%)	6,555	55.9%	5,179	44.1%
태안군	8,979	0.4%(2.1%)	5,164	57.5%	3,815	42.5%
충청남도 (전체인구)	2,125,349		1,082,259		1,043,090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2019. 7.)

최종보고회

- 2018년 현재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농업종사자는 전국 단위에서 2010년 115,583명에서 2018년 39,06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연평균 12.7%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비중은 2010년 5.7%이던 것에서 2018년 1.8%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충남은 2010년 15,858명에서 2018년 4,55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연평균 14.4%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음. 비중으로는 8년 사이 5.9%에서 1.7%로 큰 수준으로 떨어짐

[표 *] 충남 40세 미만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종사자)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5,583 (5.69)	69,421 (3.57)	68,168 (3.63)	47,783 (2.71)	43,415 (2.50)	39,064 (1.77)	-12.7
충남	15,858 (5.88)	8,858 (3.45)	8,274 (3.59)	6,314 (2.95)	5,149 (2.44)	4,553 (1.72)	-14.4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연령 및 농업종사 기간별 농가인구(15세 이상)

- 한편 농업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수는 전국적으로는 2000년 약 9만 2천 명에서 2015년 약 1만 4천 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비중으로는 2000년 6.6%이던 것에서 2015년 1.3%로 크게 감소하였음
- 충남은 2000년 약 1만 2천명에서 2015년 약 1천 5백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비중은 2000년 6.7%를 차지하던 것에서 2015년 1.2%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 충남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91,516 (6.61)	42,392 (3.33)	33,143 (2.82)	14,366 (1.32)	-30.9
충남	11,982 (6.67)	5,132 (3.14)	3,959 (2.61)	1,541 (1.17)	-33.6

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조사.

■ 60세 이상 고령농업인

- 충남의 농업인 인력 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음.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농업종사자²⁾는 2010년 전국적으로 113만 명에서 2018년 12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8%의 증가율을 보임
- 충남은 2010년 15만 3천 명에서 2018년 15만 7천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4%로 증가하고 있음. 비중으로는 전국이 2010년 55.6%에서 2018년 54.8%로 0.8%p 감소하였으며 충남은 2010년과 2018년 사이 56.6%에서 59.5%로 2.9%p로 전국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표 *] 충남 60세 이상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종사자)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29,748 (55.64)	1,185,682 (61.02)	1,177,979 (62.74)	1,178,272 (66.93)	1,200,224 (69.08)	1,208,167 (54.76)	0.8
충남	152,776 (56.61)	160,618 (62.60)	148,926 (64.57)	148,008 (69.26)	150,254 (71.20)	157,782 (59.50)	0.4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연령 및 농업종사 기간별 농가인구(15세 이상)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12.23 시행, 2009.9.27 전부개정, 1999.2.5 제정)에서 사용하는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2009.12.15, 2015.12.22 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농업 종사자’는 두 번째 조건인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최종보고회

-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농업경영주 수는 전국적으로 2000년 70만 명이던 것에서 2015년 74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비중으로는 2000년 51.0%에서 2015년 68.3%까지 증가하였음
- 충남의 60세 이상 고령 농업경영주 수는 2010년 8만 8천 명에서 2015년 9만 3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비중으로는 2000년 49.3%에서 2015년 70.6%로 증가하였음

[표 *] 충남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706,148 (51.04)	741,815 (58.28)	716,557 (60.86)	743,303 (68.29)	0.3
충남	88,499 (49.29)	93,972 (57.58)	94,254 (62.25)	93,204 (70.60)	0.3

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 노인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 12.4%의 4배로 나타남
- 충남 지역의 고령화 단계를 시군별로 구분하면, 고령화(7~13%이하)-3개시(천안, 아산, 계룡), 고령(14~19%이하)-2개시(서산, 당진), 초고령(20%이상)-10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으로 구분
- 충남의 고령화율은 18.0%로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음. 충남의 고령화율은 '16년)16.7% → '17년)17.1% → '18년)17.5% → '19년)18.0%로 상승추세를 보임

[표 *] 시도별 고령화율(2019년)

단위 : 명,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13.5	13.0	15.3	13.2	11.0	11.7	11.3	9.3	10.0	10.8	17.2	15.1	16.7	18.3	21.0	18.2	14.2	13.9
'17년	14.2	13.8	16.3	14.0	11.7	12.4	12.0	10.0	9.6	11.4	18.1	15.8	17.1	18.9	21.5	19.0	14.9	14.2
'18년	14.8	14.4	17.1	14.7	12.2	12.8	12.6	10.7	9.3	11.8	18.7	16.3	17.5	19.5	21.9	19.7	15.4	14.4
'19년 9월	15.3	15.0	17.9	15.3	12.8	13.2	13.3	11.3	9.4	12.3	19.4	16.9	18.0	20.2	22.5	20.4	16.1	14.8

자료 : 충남도청 저출산보장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 2019년도 충청남도의 노인인구는 383,326명으로 충남도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함.
- 충남 시군별 노인인구수로는 천안시(66,256명), 아산시(39,537명), 서산시(30,800명) 순이었으며, 시군별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는 서천군(34.6%), 청양군(34.1%), 부여군(32.7)순으로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남

[표 *] 충남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2019년)

단위 : 명, %

구 분	전체인구	합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충청남도	2,124,855	383,326 (18.0)	107,356 (28.0)	86,065 (22.5)	80,262 (20.9)	63,684 (16.6)	32,189 (8.4)	10,408 (2.7)	2,530 (0.7)	832 (0.2)
천안시	651,090	66,256 (10.2)	21,315	15,622	13,088	9,430	4,608	1,624	417	152
공주시	106,781	26,238 (24.6)	7,203	5,609	5,541	4,482	2,440	733	177	53
보령시	101,235	24,829 (24.5)	6,987	5,753	5,228	4,031	1,949	659	176	46
아산시	313,960	39,537 (12.6)	11,670	9,263	8,163	6,176	2,995	928	235	107
서산시	174,495	30,800 (17.7)	8,470	6,998	6,344	5,112	2,712	879	222	63
논산시	119,447	29,940 (25.1)	8,072	6,429	6,390	5,216	2,651	894	204	84
계룡시	43,325	4,673 (10.8)	1,521	1,074	848	685	368	134	32	11
당진시	167,260	29,751 (17.8)	8,132	6,651	6,239	5,179	2,474	788	225	63
금산군	52,528	15,482 (29.5)	4,076	3,358	3,429	2,751	1,353	390	96	29
부여군	67,130	21,936 (32.7)	5,475	4,627	4,727	4,006	2,157	740	154	50
서천군	53,010	18,322 (34.6)	4,536	3,971	3,947	3,316	1,803	589	120	40
청양군	31,387	10,688 (34.1)	2,570	2,176	2,302	2,117	1,099	347	59	18
홍성군	100,701	22,872 (22.7)	6,023	5,012	4,848	4,109	2,027	626	166	61
예산군	79,523	23,583 (29.7)	6,231	5,036	5,162	4,257	2,102	617	145	33
태안군	62,983	18,419 (29.2)	5,075	4,486	4,006	2,817	1,451	460	102	22

자료 : 충남도청 저출산보건의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최종보고회

- 2019년도 충청남도의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383,326명 중 108,827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 시군별 독거노인수로는 천안시(16,939명), 아산시(10,947명), 논산시(9,540명) 순이었으며,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수가 차지하는 비율로는 논산시(31.9%), 부여군(31.5%), 청양군(31.2%) 순으로 독거노인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 충남 시군별 독거노인 현황(2019년)

단위 : 명, %

시군명	전체인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충청남도	2,124,855	383,326	18.0	108,827	28.4
천안시	651,090	66,256	10.2	16,939	25.6
공주시	106,781	26,238	24.6	7,662	29.2
보령시	101,235	24,829	24.5	7,443	30.0
아산시	313,960	39,537	12.6	10,947	27.7
서산시	174,495	30,800	17.7	8,029	26.1
논산시	119,447	29,940	25.1	9,540	31.9
계룡시	43,325	4,673	10.8	1,038	22.2
당진시	167,260	29,751	17.8	8,332	28.0
금산군	52,528	15,482	29.5	4,889	31.6
부여군	67,130	21,936	32.7	6,900	31.5
서천군	53,010	18,322	34.6	5,581	30.5
청양군	31,387	10,688	34.1	3,332	31.2
홍성군	100,701	22,872	22.7	6,363	27.8
예산군	79,523	23,583	29.7	6,612	28.0
태안군	62,983	18,419	29.2	5,220	28.3

자료 : 충청도청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 2018년도 충청남도의 주거·의료·재가시설은 6,198개로 정원은 11,330명으로 나타남. 이는 충남지역 노인인구 대비 3%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

[표 *] 충남 주거·의료·재가시설 현황(2018년)

단위 : 개, 명, %

구분		시 설 수			종사자수			정 원			현 원			입 소 율		
		계	복지법인	기타	계	복지법인	기타	계	복지법인	기타	계	복지법인	기타	계	복지법인	기타
계		6,198	137	6,061	7,890	2,679	5,211	11,330	3,892	7,438	9,520	3,325	6,195	84.0	85.4	83.3
생활시설	주거복지	20	4	16	90	28	62	464	175	289	257	98	159	54.4	56.0	55.0
	의료복지	298	56	242	5,949	1,873	4,076	9,650	2,999	6,651	8,357	2,726	5,631	86.6	90.9	84.7
이용시설	재가복지	134	76	58	1,601	767	834	1,216	718	498	906	501	405	74.5	69.8	81.3
	여가복지	5,746	1	5,745	250	11	239									

자료 : 충남도청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최종보고회

■ 장애인

- 2018년도 충청남도의 장애인 수는 131,910명으로 시군별로는 천안시(26,107명), 아산시(15,209명), 논산(10,79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63,977명)으로 가장 높았고, 청각장애(20,217명), 시각장애(12,052명), 지적장애(11,661명) 순이었음

[표 *] 충남 장애인 현황(2018년)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뇌전증
	순위	1	3	2	8	4	5	9	6	7	14	11	12	15	10	13
충청남도	131,910	63,977	12,052	20,217	1,011	11,661	10,993	898	5,325	3,350	210	577	467	123	772	277
천안	26,107	12,083	2,675	3,463	211	2,331	2,500	304	1,076	929	66	117	131	28	138	55
공주	8,795	4,120	714	1,187	60	1,095	766	64	427	207	7	34	30	6	62	16
보령	8,601	4,432	736	1,166	67	890	596	35	283	192	19	78	25	7	49	26
아산	15,209	7,202	1,532	2,132	146	1,410	1,258	132	631	478	24	67	57	18	87	35
서산	9,937	4,966	914	1,595	72	813	785	72	304	231	15	31	41	11	65	22
논산	10,798	4,841	841	1,820	81	1,025	979	41	813	201	7	37	21	8	55	28
계룡	1,567	741	144	223	19	119	166	24	50	52	3	3	4	2	15	2
당진	10,239	5,380	1,006	1,505	93	782	794	70	229	218	8	45	36	9	54	10
금산	4,796	2,382	376	817	38	411	389	24	146	114	7	15	15	7	44	11
부여	7,112	3,567	545	1,185	42	614	555	34	317	137	7	26	20	3	43	17
서천	5,716	2,952	497	857	42	498	471	15	190	107	10	16	12	3	35	11
청양	3,224	1,569	268	648	28	255	237	11	86	59	1	20	10	1	19	12
홍성	7,427	3,494	630	1,546	38	514	538	40	356	161	7	30	23	10	33	7
예산	7,313	3,487	723	1,336	46	544	591	12	261	162	18	38	28	4	48	15
태안	5,069	2,761	451	737	28	360	368	20	156	102	11	20	14	6	25	10

자료 : 충남도청 저출산보전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포함하는데, 현재 사회적 농업에서의 주요 참여 대상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2018년도 충청남도의 발달 장애인 수는 12,559명으로 충남 장애인 인구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 시군별 발달장애인 수는 천안시(2,635명), 아산시(1,542명), 공주시(1,15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발달장애인 수는 18세 이상~60세 이하의 연령대가 전체 72.5%를 차지하고 있음

[표 *] 충남 발달장애인 현황(2018년)

단위 : 명

	지적	자폐	합계	0~5세	6~10세	11~15세	16~17세	18~22세	23~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세 이상
계	11,661	898	12,559	127	813	836	398	1,399	2,044	2,064	2,009	1,620	509	770
천안시	2,331	304	2,635	40	244	252	132	381	515	397	288	217	66	103
공주시	1,095	64	1,159	3	29	44	24	96	169	194	219	186	78	117
보령시	890	35	925	4	34	44	19	62	109	189	228	159	37	40
아산시	1,410	132	1,542	26	163	120	60	185	277	247	176	166	50	72
서산시	813	72	885	14	53	68	20	102	159	169	138	94	30	38
논산시	1,025	41	1,066	8	60	55	23	90	149	163	181	187	56	94
계룡시	119	24	143	1	15	15	6	18	29	31	12	11	2	3
당진시	782	70	852	10	70	72	24	104	127	112	139	106	41	47
금산군	411	24	435	3	34	23	14	42	62	63	77	71	17	29
부여군	614	34	648	5	19	20	14	57	84	113	134	103	34	65
서천군	498	15	513	1	15	17	15	52	71	93	90	78	35	46
청양군	255	11	266	2	12	9	12	29	40	42	54	40	9	17
홍성군	514	40	554	6	26	38	9	71	78	98	96	79	11	42
예산군	544	12	556	3	19	38	16	64	84	84	105	80	27	36
태안군	360	20	380	1	20	21	10	46	61	69	72	43	16	21

자료 : 충남도청 저출산보전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최종보고회

- 2018년도 충청남도의 장애인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66,047명(50.1%)으로 가장 높았고, 51세~64세가 35,487명(26.9%)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인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장애 등급별로는 6급이 32,544명으로 가장 높았고, 5급(29,914명), 4급(20,010명), 3급(22,905명) 순이었음

[표 *] 충남 장애인 연령별·등급별 현황(2018년)

단위 : 명

구 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고
계	131,910	9,270	17,267	22,905	20,010	29,914	32,544	(100%)
1~10세	1,493	266	526	454	129	74	44	(1.1)
11~20세	2,919	691	797	1,017	105	137	172	(2.2)
21~30세	4,261	977	1,256	1,161	172	247	448	(3.2)
31~40세	7,457	958	1,465	1,580	540	861	2,053	(5.7)
41~50세	14,246	1,303	2,258	3,117	1,359	2,191	4,018	(10.8)
51~64세	35,487	2,245	4,774	6,554	4,437	7,206	10,271	(26.9)
65세 이상	66,047	2,830	6,191	9,022	13,268	19,198	15,538	(50.1)

자료 : 충남도청 저출산보전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 외국인 주민

- 2017년 충남의 외국인 주민 수는 104,854명으로 도내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8%로 전국 1위, 인원수로는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함

[표 *] 충남 외국인 주민 현황(2017년)

단위 : 명, %

총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b)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c)
	소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104,854	84,752	33,806	8,162	6,149	15,100	21,535	7,474	12,628
(100%)	(80.8)	(32.2)	(7.8)	(5.9)	(14.4)	(20.5)	(7.1)	(12.1)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17년 충남의 시군별 외국인 주민 수는 천안시(30,379명), 아산시(25,935명), 당진시(8,929명) 순으로 나타남. 시군별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아산 7.7%, 금산 5.5%, 당진 5.3% 논산 5.2%, 천안 4.6% 순이었음

[표 *] 충남 시군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7년)

단위 : 명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04,854	30,379	3,607	4,215	25,935	6,894	6,384	398	8,929	3,085	2,550	2,056	1,158	3,641	3,603	2,020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17년 충남의 국적별 외국인 주민 수는 한국국적 취득자 및 자녀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태국 출신이 58.8%로 나타남

[표 *] 충남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7년)

단위 : 명, %

계	중 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 베키 스탄	캄보 디아	네팔	인도 네시아	필리핀	한국계 러시아	카자 흐스 탄	스리 랑카	몽골	미얀 마	기타
84,752	22,550	9,831	9,758	7,706	5,157	4,700	3,914	2,769	2,719	1,976	1,964	1,567	1,369	1,319	7,453
100%	26.6	11.6	11.5	9.1	6.1	5.5	4.6	3.3	3.2	2.3	2.3	1.8	1.6	1.6	8.9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외국인 주민수는 최근 9년간 2.3배 증가하였음

[표 *] 충남 연도별 외국인 주민수 현황(2017년)

단위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년
주민 수	45,920	48,874	57,869	67,157	68,639	75,438	88,189	95,553	104,854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최종보고회

■ 다문화가족

- 2017년 충남의 다문화가족 수는 51,757명으로 도민의 0.72%를 차지함. 세부적으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5,636명, 배우자 17,312명, 자녀 13,021명, 기타 동거인 5,788명이 포함

[표 *] 충남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2017년)

단위 : 명

계			결혼이민자 (국적미취득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636	1,919	13,717	8,162	916	7,246	7,474	1,003	6,471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주 1.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주 2.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 포함

- 2017년 충남의 시군별 다문화가족 수는 천안시(4,346명), 아산시(2,903명), 당진시(1,411명) 순으로 나타남. 시군별 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비율은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자등 비율은 금산 0.93%, 청양 0.88%, 아산 0.86% 순이었음

[표 *] 충남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2017년)

단위 : 명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5,636	4,346	816	652	2,903	1,135	927	101	1,411	519	525	384	274	664	634	345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17년 충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 82.7%로 나타남

[표 *] 충남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2017년)

단위 : 명, %

계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대만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기타
15,636	4,486	3,853	3,207	1,391	635	553	243	177	176	153	148	98	52	464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최근 9년간 1.8배 증가하였음

[표 *] 충남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2017년)

단위 : 명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민 수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35	14,863	15,636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17년 충남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13,021명으로 도민의 0.6%를 차지하는데, 이는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를 포함한 수치임

[표 *] 충남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년)

단위 : 명

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3,021	6,640	6,381	393	185	208	12,628	6,455	6,173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2017년 충남의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만 12세 이하가 89.7%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 충남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년)

단위 : 명

계	만6세 이하	만7~12세 (초등)	만13~15세 (중등)	만16~18세 (고등)
13,021 (100%)	6,543 (50.3%)	5,130 (39.4%)	864 (6.6%)	484 (3.7%)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최종보고회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최근 9년간 2배 증가하였음

[표 *] 충남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현황(2017년)

단위 : 명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민 수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10,908	11,574	13,021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 영유아

- 2017년 충남의 영유아(0세~5세) 수는 106,134명으로 도내 총인구대비 5%를 차지함. 충남 시군별로 영유아(0세~5세)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37,999명), 아산시(20,737명), 당진시(9,996명) 순이었음

[표 *] 충남 시군별 영유아(0세~5세) 현황(2018년)

단위 : 명

구분	총인구수	영유아 수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충청남도	2,126,282	106,134	14,140	15,941	17,991	19,457	19,110	19,495
천안시	646,075	37,999	5,236	5,746	6,491	7,010	6,731	6,785
공주시	107,581	3,434	468	500	534	607	629	696
보령시	101,990	3,669	446	533	623	649	732	686
아산시	312,822	20,737	2,626	3,105	3,613	3,923	3,668	3,802
서산시	174,162	9,444	1,327	1,421	1,595	1,697	1,719	1,685
논산시	120,230	4,414	594	668	736	789	816	811
계룡시	43,731	2,317	265	326	396	422	421	487
당진시	167,770	9,996	1,355	1,566	1,663	1,851	1,786	1,775
금산군	53,222	1,551	202	219	267	271	270	322
부여군	68,078	1,775	206	254	281	343	352	339
서천군	53,922	1,422	195	197	229	237	278	286
청양군	32,296	788	115	108	122	141	140	162
홍성군	101,082	4,646	611	739	796	808	836	856
예산군	80,083	2,067	240	307	311	381	400	428
태안군	63,238	1,875	254	252	334	328	332	375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 아동

- 2019년 9월 현재 충남의 아동(0세~17세) 수는 344,170명으로 시군별 아동 수로는 천안시(118,706명), 서산시(29,897명), 당진시(29,149명) 순이었음
- 연령별로는 충청남동 아동 수 대비 7세(21,106명)와 8세(21,36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 충남 시군별·연령별 아동(0세~17세) 현황(2019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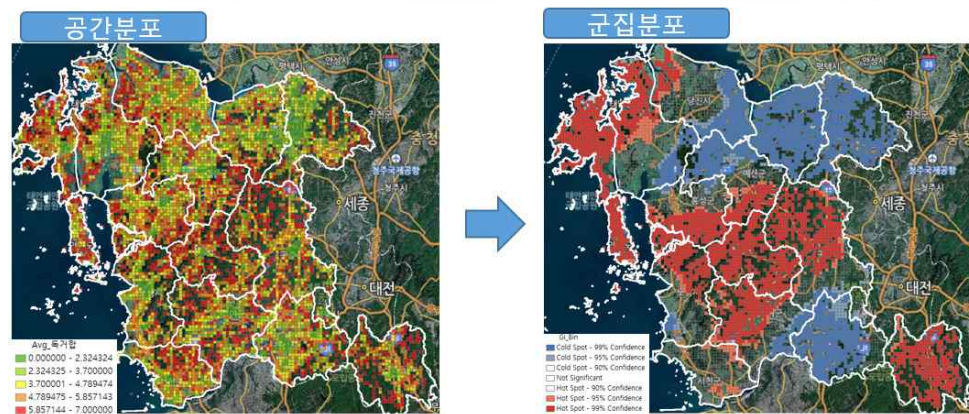
연령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합계	344,170	118,706	12,831	13,204	62,609	29,897	15,782	9,379	29,149	6,398	6,992	5,293	2,884	15,707	8,425	6,914
0세	13,195	4,862	530	431	2,371	1,246	599	225	1,219	194	171	167	89	604	262	225
1세	14,788	5,479	417	487	2,793	1,348	631	281	1,416	198	236	198	114	654	280	256
2세	16,298	5,909	541	580	3,164	1,449	704	324	1,557	236	262	185	101	726	299	261
3세	18,465	6,723	540	629	3,724	1,620	777	410	1,695	248	290	235	118	757	349	350
4세	19,237	6,882	611	685	3,801	1,707	808	416	1,783	258	353	246	132	863	380	312
5세	19,131	6,792	612	676	3,665	1,684	799	474	1,797	279	347	275	140	825	417	349
6세	19,969	6,937	746	701	3,902	1,761	824	485	1,765	318	345	284	154	898	439	410
7세	21,106	7,339	752	757	4,093	1,827	901	521	1,866	340	415	282	168	932	505	408
8세	21,369	7,246	777	849	4,141	1,815	899	560	1,896	400	386	336	181	964	511	408
9세	20,379	6,798	738	792	3,837	1,757	921	586	1,816	419	414	322	171	929	516	363
10세	19,765	6,698	751	780	3,662	1,694	900	562	1,673	365	391	286	162	951	476	414
11세	20,853	7,013	770	857	3,760	1,777	1,028	614	1,729	403	432	325	174	988	525	458
12세	20,675	6,955	820	793	3,575	1,828	995	637	1,658	460	424	314	173	996	586	461
13세	19,217	6,345	763	802	3,304	1,616	951	662	1,496	436	493	321	160	889	538	441
14세	18,790	6,341	777	788	3,162	1,542	918	589	1,416	467	463	351	176	852	520	428
15세	20,170	6,792	822	861	3,327	1,722	1,024	676	1,490	446	491	336	200	999	556	428
16세	20,013	6,688	901	830	3,164	1,689	999	698	1,407	473	520	415	221	944	597	467
17세	20,750	6,907	963	906	3,164	1,815	1,104	659	1,470	458	559	415	250	936	669	475

자료 : 충청남도 주민등록 통계

3.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그쳤지만 향후 공간정보에 기반한 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지역 단위 사회적 농업의 유형 및 지역의 역점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2. 취약노인의 공간적 양극화(독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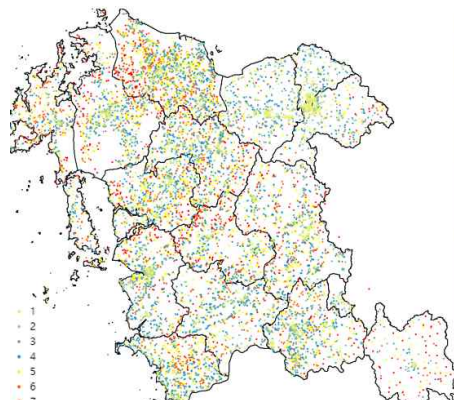


자료: 최돈정(2019). 현장세미나 자료집

[그림 *] 공간정보에 기반한 취약계층 발굴 예시

- 타 정보와 연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및 향후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복지정책 관련 거점 기능의 공간적 배치 및 역할 등을 위한 수요응답형 복지정책의 기초작업이 될 것임

❖ 분석결과_치매노인의 접근성 취약점수 분포



자료: 최돈정(2019). 현장세미나 자료집

❖ 분석결과_치매노인(7점)의 밀도



[그림 *] 지역복지정책 관련 거점기능의 공간적 배치 예시

제6장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1. 2020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연구
2.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지역 단위 추진을 위한 관계실과 협의 체계 마련
4. 향후 과제

제6장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방안

1. 2020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연구

1) 2020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 육성 시범사업
- 목적: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의 농장별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충남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읍면동 단위 지역복지와 결합하여 지역 밀착형의 현장 모델로 추진하여 정책의 성공가능성 향상
- 형식: 패키지 형식의 공모사업(사업계획서 제출로 선정)
- 단위: 읍면 단위(농촌지역), 동 단위도 가능(도농복합지역)
- 총 사업량: 4개소(농촌지역 2개소, 도농복합지역 2개소)
- 총 사업비: 32백만 원(개소당 80백만 원*4개소)
 - 도비:시군비 =5:5 매칭
- 사업 기간: 2년(사업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 대상 : 시군 행정

(2) 신청자격(상세)

- 해당 시군의 특정 읍면동 1개소 혹은 2~3개소를 연계하여 신청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연계하거나, 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완료 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담당자를 명확하게 정해야 함

-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을 연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가 모여 연구회나 협력네트워크(혹은 준비위원회)를 구축하여 신청해야 함

- 협의체(네트워크) 구성: 읍·면 주민 대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 조직(장애인협의회,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회, 치매안심센터,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협의회, 다문화가족모임 보건소 등)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단체, 보조활동 지원기관 그리고 사회적 농업 실천 희망 농장 등

* 참고: 프로그램 실습 농장 가운데 지역 공유지 활용 계획 포함시 가산점 부여



[그림 *] 읍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협의체) 구성(안)

(3) 신청사업 유형 :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 연계 모델(예시)

- 노인복지형 : 노인 노동력에 무리가 없는 가벼운 일자리 제공 형태
- 장애인복지형 :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는 배리어프리 형태
- 다문화가족복지형 : 다문화가족을 배려하고 국제교류 거점 역할 형태
- 청소년복지형 : 청소년의 진로체험(농업과 농촌)을 중심으로 운영 형태
- 마을후계자양성형 :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4) 사업 추진절차

최종보고회

- 1단계 : 지역 주체인 협력네트워크의 추진 체계 정비(향후 법적지위확보)
- 2단계 : 사전 교육(참가자 스스로 지역 연계협력 방안 모색)
- 3단계 : 프로그램 진행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안정화
- 4단계 : 사회적 농업 국비 사업 등 관련 사업 연계,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로 확장

(5) 패키지사업의 구성(1~4)

① 읍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성

- 취지: 읍면동 단위로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발굴과 육성 및 사회적 농업 관련 현황조사, 교류, 사업 구상,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활동 지원. 이를 통해 기존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 성격: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 및 운영비 지원
- 사업량: 1식(일반운영비 + 네트워크 사업비)
- 사업비: 24백만 원
- 사업주체: 사회적 농업 협력 네트워크(혹은 연구회)
 - 향후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센터’로 법인화 혹은 주민자치회로 정착

[표 *] 읍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상세 내역	단가	단위(개월)	총액	비고
일반운영비	1,000	8	8,000	
네트워크 기본사업비	1,000	8	8,000	회의, 견학 등
사업비 합계			16,000	

②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적 농업 활동교육 실시

- 취지: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기초교육 실시. 매월 교육을 통해 지역복지와 사회적 농업의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성격: 참여자의 교육에 관련된 비용 지급, 매달 농장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에 의해 진행
- 사업량: 8회(8개월)
- 사업비: 12백만 원
- 사업주체: 사회적 농업 협력 네트워크(혹은 연구회)

[표 *]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적 농업 활동교육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상세 내역	단가	명	개월	총액	비고
강사료	300	2	8	4,800	
현장사례 발표비	200	2	8	3,200	
자료인쇄비	200	1식	8	1,600	
재료비	10	30	8	2,400	
사업비 합계				12,000	

참고: 사업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집중사전교육과정은 도에서 담당

③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 취지: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장(면 단위 3~5개소)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새로운 실천을 위한 선행사업 성격의 실습을 지원. 단기 과정, 심화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 가능(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선진 사례를 참고하도록 첨부)
- 성격: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선행사업 성격의 지원
 - 본격적인 시설정비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국비 사업 활용
- 사업량: 총 4개소

최종보고회

■ 사업비: 41.6백만 원(개소가 많으면 총액 범위에서 조정)

■ 사업주체: 개별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표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상세 내역	단가	개소	횟수	총액	비고
대관료	100	4	8	3,200	
강사료	300	4	8	9,600	
보조인건비	200*2	4	8	12,800	장애인 등 참여수에 따라 조정. (5인 교육생 당/보조인원 1명 배당)
재료비	400	4	8	12,800	
차량비	100	4	8	3,200	취약계층 이동수단을 위함
사업비 합계				41,600	

④ 사회적 농장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취지: 읍면동 단위의 지역복지 기관, 단체와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이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밀착하여 상담 및 컨설팅 실시

■ 성격: 현장 밀착형 컨설팅과 추진과정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량: 52회(10개월)

■ 사업비: 10.4백만 원

■ 사업주체: 외부위탁 혹은 사회적 농업 협력 네트워크(혹은 연구회)

[표 *] 사회적 농장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상세 내역	단가	단위(횟수)	총액	비고
컨설팅비	200	52	10,400	농장당 월 1.5회 컨설팅 진행
사업비 합계			10,400	

(6) 충남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기대 효과 및 차별성

■ 기대효과

- 충남형 사회적 농업 모델 개발로 도내 사회적 농업가치 확산 도모
- 농업을 활용한 돌봄, 교육, 고용으로 농촌형 복지체계 구축

■ 충남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차별성

- 기존의 개별 단위 사업에서 정책 패키지 사업으로 구성
- 개별 농장 지원 사업에서 읍면동 단위 융·복합 협업사업으로 확장
- 프로그램 중심에서 ‘사람’까지 지원하는 현장형 모델 개발
- 행정 주도 신청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청

2) 2020년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 연구 과제명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 연구 기간 : 2020. 3. ~ 2020. 12. (10개월)

■ 연구 예정금액 : 70,000천원(도비 70,000천원)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목적) 민선7기 충남에서는 복지 도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교육·고용·치유·힐링 등의 기능을 하는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진계획임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부터 중간 점검 및 사업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사업 추진 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환류시켜 충남에 맞는 안정적인 농촌지역복지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자 함
- (필요성)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충남에서 사회적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 중장

기 로드맵 및 추진 전략 등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과업의 주요 내용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시행부터 종결까지 추진상황 및 실태 모니터링
- 충남 사회적 농업 발전 방안 제안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활용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발전방안 마련
- (기대효과) 시범사업을 보완하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적절성과 안정성 확보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문제점) 모니터링 점검사항 및 기준 부재
- (대책) 모니터단 사전 교육과 운영 매뉴얼 마련으로 결과의 일관성 및 충실성 제고

■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사회적 농업 분야 연계하여 충남의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2.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7조)

-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 네트워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인력 양성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의안번호</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제 호</td> </tr> </table>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10. . 발 의 자 : 김 연, 이공휘, 최 훈, 김한태, 김옥수, 김기영, 정병기, 여운영, 황영란, 김득용, 김복만, 김명선, 김기석 의원
의안번호	제 호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적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 *]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3. 지역 단위 추진을 위한 관계실과 협의 체계 마련

- 목적: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실과 논의
- 일시: 2019. 10. 22 (화요일) 14:00~16:00
- 장소: 충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
- 참석자: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관계 실과 (2국 1실 1관 8개팀)

구분			담당자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조원정 주무관
저출산 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이재은 팀장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립팀	유태조 팀장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임재란 팀장
		보육지원팀	북화경 팀장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조진배 팀장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정낙도 팀장
		청소년팀	박일순 팀장

■ 주요 내용

- 주민자치회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지역 단위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자치분권팀)
- 아동분야는 치유사업(심리정서 사업) 중심의 교육적인 접근이 좋으며, 참여하는 아이들이 회차별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한 전문가 배치 및 구축 체계가 필요(아동복지팀)
- 지역의 장애인관련시설 등 유관기관의 ‘도 협회장’이 각 지역별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이나 그룹을 추천하여 지역 참여 유도(장애인자립팀)

최종보고회

-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수단이 불편한 계층은 이동의 어려움이 있으니, 시군 100원 택시 등과 직접 계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필요(노인일자리팀)
- 사회적 농업은 효율성이 낮은 프로그램임. 그러나 사회적 농업을 효율성으로 보면 안 될 듯함(청소년팀)
-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농장체험 형식으로 접근하되 장애 아이들과 부모님을 함께 치유하는 기관과 연계 필요(보육지원팀)
- 다양한 사회적 농장의 유형 발굴을 통해 지역 특성 반영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추진 예정(농촌복지여성팀) 등



[그림 *]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실과 간담회 개최

4. 향후 과제

■ 사업 지속성: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본 사업 진행(2021~)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경과를 잘 모니터링하여 2021년부터는 충남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가도록 노력해갈 필요가 있음

■ 연구 확장성: 충남 사회적 농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진행(2010)

- 충남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20년에는 사업의 시행부터 점검, 결과까지를 살펴보고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충남의 사회적 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갈 필요가 있음

■ 통합 데이터 구축: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자료 수집에서 나아가 타 정보와 연계한 공간정보 기반 통합 데이터 구축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충남의 다양한 취약계층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정리해보는 단계에 그쳤지만 향후 생활형 SOC 등 다양한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통합된 데이터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음

■ 지역 거버넌스 강화: 관계실과 협의 체계를 정례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단체,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중간지원조직이 함께하는 지역 단위 지원 체계 구축

- 본 연구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충청남도 관계실과 협의를 통해 지역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바탕으로 한 주민 대표와 다양한 취약계층 관련 단체,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지역의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해가는 계기로 삼아가야 할 것임

부록

1. 사회적 농업 현장 세미나 개최
2. 협동조합 행복농장
3.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4. 충남도청 사회적 농업 관계실과 협의 회의록

부록

1. 사회적 농업 현장 세미나 개최

- 주제: 마을복지 실천과 지역과 복지정책의 연계 가능성
- 일시: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14:00~18:00
- 장소: 홍동밖뜰도서관 1층 아고라방
- 주최: 충남도의회 데이터 기반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 마을학회 일소공동체, 충남연구원 농촌현장연구회
- 주요 내용
 - 현장탐방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홍동면), 협동조합 행복농장(장곡면), 꿈이 자라는 뜰(홍동면)
 - 발표
 - 농촌의 내일과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국장 최문철
 - 농업과 돌봄의 만남,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경험 : 협동조합 행복농장 실무이사 최정선
 - 데이터 기반 복지 취약지역 모니터링 사례 : 충남연구원 최돈정
 - 충남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 : 충남연구원 김기홍
 -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6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차원의 복지문제의 접근 방법 및 사회적 농업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2. 협동조합 행복농장

■ 행복농장, 사람을 잇다. 세상을 잇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지역에는 돌봄의 가치를, 전문가들에게는 농업의 돌봄 기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행복농장은 사람과 마을 그리고 농업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가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 돌봄농장으로서의 행복농장

-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 행복농장 X 농업과 돌봄의 만남

- 농업과 돌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역의 농장과 협의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고유의 목적과 더불어 돌봄이라는 사회적 미션이 결합하는 협동조합 형식의 행복농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복농장 X 마을과의 협력

- 행복농장의 돌봄농업은 마을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을에 있는 농장들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작물과 작업실 등 농업 기반,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소와 강의실, 요리체험실과 휴게실 등 체험기반 그리고 마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넓은 논밭과 저수지 그리고 산과 작은 꽃밭들은 돌봄농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들입니다. 행복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마을영농조합을 통해, 그리고 농장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함께 이용합니다. 마을 전체가 돌봄의 공간이며, 돌봄 과정이 마을 전체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 행복농장 X 교육협업

- 행복농장은 독립적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면서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 홍성농업기술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센터는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진행, 자연구시 인턴 프로그램 과 고용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행복농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성농업기술센터 역시 농장의 농업생산 기반, 체험 시설 지원을 포함하여 농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복농장 X 농업협업

- 행복농장은 허브, 꽃과 채소, 토마토를 유기재배하는 농장입니다. 이러한 재배 작물의 선택 역시 판매 목적과 더불어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하우스 250평 4동 1,000평이 농장의 기본 시설입니다. 허브 종류로는 바질, 애플민트, 루꼴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두레)생협에 판매를 하거나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되는 바질페스토, 허브 차의 가공 뿐 아니라 봄과 가을에는 꽃과 채소 모종을 생산하여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행복농장: 만성정신질환자, 장애인, 취약계층을 돌보고 재활에 힘쓰는 사회적 농장

- 김정섭, 안석, 이정해, 김경인(2017)
-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7~72쪽
- 농장은 크지 않다. 농지 1,000평 남짓에 올려놓은 비닐하우스 다섯 동 이 전부다. 여러 가지 허브와 꽃, 상추를 재배한다. 농작물을 돌보는 것이 농업이라면, 홀로한 농민은 사람을 돌보는 데에도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농장은 스스로 제작한 자료에서, 농장 설립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 행복농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게 돕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미혼모, 탈북자녀, 청소년, 노숙자, 자살유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목공, 요리 등을 운영하는 ‘행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한 해 동안 운영한 결과, 2017년에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4박5일 간 진행되는 ‘일반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행복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농업 활동의 기초과정이다. 한 해 동안 2~3회 진행하는데, 매회 10~12명이 참여한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43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기간 중 오전 시 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농장의 농업활동에 참여한다. 저녁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에서 면담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희망자 4명을 선정해 2주~3주에 걸친 ‘자연구시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농업활동이 심화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신건강 측면의 프로그램 비중은 줄어든다. 행복농장은 2016년에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들 가운데 3명을 고용하였다. 둘 중에 한 명은 인턴 자격으로 일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턴 급여를 지원한다. 말하자면, 보잘 것 없는 농장에서 3명의 사회적 약자가 직업재활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것이다.
- 자연구시 프로그램 같은 돌봄농업 실천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 행복농장의 실무 책임자인 최△△씨나 옆에서 항시 일을 돕는 젊은협업농장의 정□□씨는 정신과적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대답한다. 농민이 진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말이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몇 가지 있다고 말한다.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은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들인데, 시설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딱히 할 일이 없는 이들이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농장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재활 기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공장에서 단조로운 작업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농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농작업에 참여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정신질환 증상이 완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곳에 고용되어 일한 지 1년이 지난 이를 보면 ‘처음보다 인상이 많이 환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처음에 왔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사도 자연스럽

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곁에서 느낄 수 있다 고 한다.

- 그럭저럭 농장을 차려놓고 농업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이들에게 돌봄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으니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면, 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행복농장이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고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행복농장의 경험 그 자체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아주 초기 단계 이며 숱한 난관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 그 중에서도 돌봄농업을 실천한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헌신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힘든 길을 걷는 일이다.
- 첫째, 농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다. 행복농장을 예로 들어보자. 비닐하우스 다섯 동이 전부인 이 농장의 규모로 볼 때, 최적의 노동력 투입 규모는 2명이다. 재배기술이나 마케팅 등 여러 조건이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비닐하우스 다섯 동에서 원예작물 재배는 부부가 가족노동으로 꾸려갈 수 있는 최대 규모다. 남편 과 부인이 일 년 내내 하루 종일 비닐하우스에서 일해야 대략 4,000만~5,000 만 원 쯤의 농업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규모다. 즉, 이곳에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농작업만 해야 한 가족이 먹고살 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당연히 농업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 2명에 농장 직원 1명이 곁붙어 보살펴야 한다. 인턴 등으로 고용한 이들의 농작업 속도나 양은 평균적인 농민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행복농장의 연간 농업소득은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 은 판로가 안정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돌봄에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을 할애한 탓이 크다. 그 같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받는 것도 아니다. 가령,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시설은 국가로부터 이러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대략 1인당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다. 행복농장의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그 같은 요양급여 제도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충남정신건강센터가 조직한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파트너일 뿐이다. 이 프로그램은 홍성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 을 토대로 운영되는데, 행복농장에는 ‘강사비’ 항목으로 금전적 대가가 돌아온다. 참가자 수에 관계없이 1일 3만 원 정도다.
- 둘째, 시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가 있다. 비닐하우스 몇 동과 행복농장의 고정 인력 3명으로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여자 10여 명을 돌보기 어렵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행복농장에서 10명 이상이 동시에 농업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들과 협력하는 것이었

다. 행복농장에서는 두세 명만 농작업을 진행하고, 한두 명씩 다른 농장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장 이 여섯 개 쯤 된다. 오전에는 각 농장마다 한두 명을 배치 받아 농작업 활동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다시 모여 충남정신건강센터 측에서 나온 직원이 진행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농장에 고정 인력으로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사가 취업해 있는 상태가 이상적일 터이다. 언론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 네덜란드의 돌봄농장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한국 농촌에서는 연감생심이다. 결국 지역의 사회복지 혹은 보건복지 분야 직능 종사자나 전문가와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인적 자원을 필요한 때마다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 셋째,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이 단지 농업이라는 포장지를 둘러쓴 또 하나 의 사회복지 시설일 수는 없다. 즉, 사회적 농장을 찾아오는 이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류 일 수도 있고, 농장에 고용됨으로써 갖게 되는 직업적 관계일 수도 있다. 사회적인 경험은 재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면 농촌 마을 주민들의 상당한 이해와 용인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농장이 폐쇄된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농촌 마을 공동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행복농장이 터를 잡은 농지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다.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내 공간은 오누이권역 다목적 회관을 빌려 사용한다. 행복농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다면, 행복농장은 경영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주변의 여섯 농장들이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가자를 받아 농업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지 않았다면, 행복농장의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제약받았을 것이다. 심지어 4박 5일 간의 일정 동안 참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데에도 행복농장이 자리 잡은 마을 도산리 부녀회 등의 협력이 있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개최 목적

- 사회적 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조직법인(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 제고
- '1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등 사업 추진 관련 의견 교류

■ 설명회 개요

- 일시 : '18. 3. 9(금) 13:00 ~ 18:00
-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참석 대상자 : 약 100명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조직·법인(농가) 등
- 주요 내용
 -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및 '18년 사업 시행지침 등 정책방향 설명
 - 농촌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필요성 이해(강의)
 - 사회적 농업과 마을(충남 홍성군 장곡면 사례 중심으로, 강의)

② 2018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사업규모 및 내용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표 2]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특회계)	—	—	540	1,080
국 고(70%)	—	—	378	756
지방비(30%)	—	—	162	324

■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조직
 - 사회적 농업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심사위원회가 판단
 - 조직 형태 :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제한요건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18년도에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6차산업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노인일자리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선정우선순위
 - 농업(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단체
 - 시·도(시·군)의 재정·조직·행정적 지원 계획 등 지자체의 사회적 농업 육성 의지가 있는 지역
 - 참여 구성원 중 사회복지사, 의료·보건분야, 교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경우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최종보고회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업인 참여 조직

■ 지원 내용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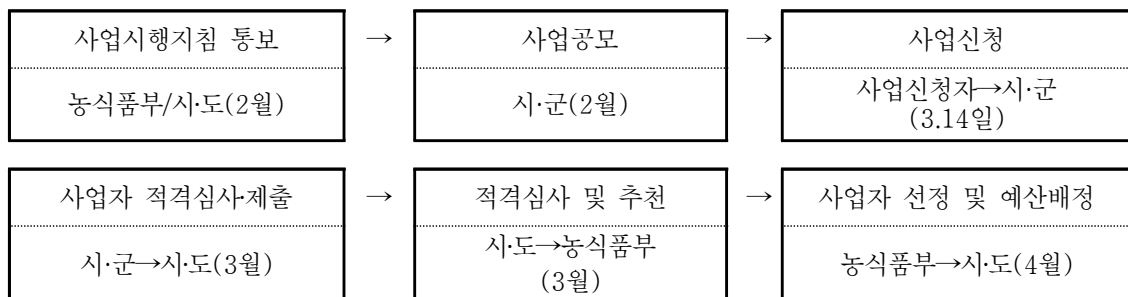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기획비
 - 강사비
 - 재료비
 - 시설사용료
 - 교통비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30% 이내)

■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지원한도액
 - 프로그램 운영비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네트워크 구축비 :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1년
 - 매년 사업성과 및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추가 지원 가능(신청서 제출 시)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8.2.14)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시·도에서 교부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사업신청 가능 대상 법인 등에 배부하는 등 '18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3.14)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3.19)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3.23)

■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3.28)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3월말)

■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4월초)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4월초)

■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시·군은 사업자인 사회적 농업 지원 조직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조직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

최종보고회

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인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별도 마련 예정)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1.10)
- 시·군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연말에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시·도에 제출(7.15, ‘19.1.20)
- 시·도는 반기별 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사회적 농업 조직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 서식 - 별도 마련 예정)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9.1.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에 대해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안내

- 시·군은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조직 수요조사를 진행하여(‘18.4.1~5.31)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6.15)

③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사업규모 및 내용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표 2]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특회계)	—	540	1,080	계속
국 고(70%)	—	378	756	계속
지방비(30%)	—	162	324	계속

■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19년도에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18년도 시범사업자
 - '18년도 시범사업자(9개소)는 '18년도 사업을 보완하여 '19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19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경우 '19년도에도 지속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최종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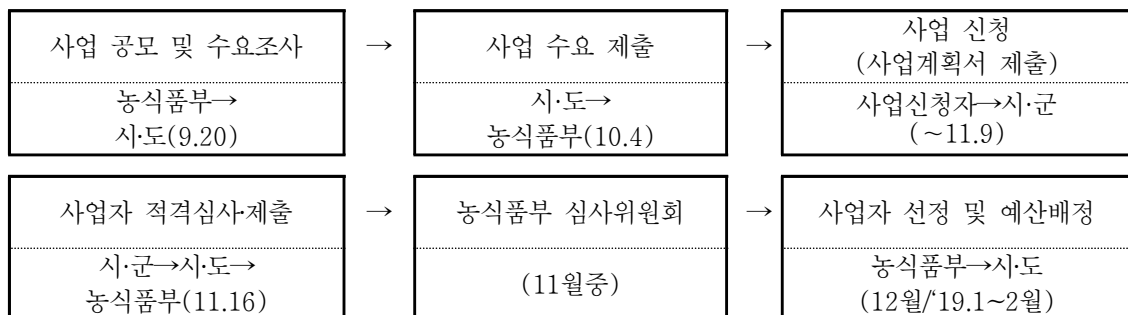
- 강사비
- 재료비
- 시설사용료
- 교통비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취약계층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취약계층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냉·난방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포함)
 - 취약계층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1년
 - 지원기간 : 5년
 -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19년도 신규신청자)



■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19년도 사업 수요 조사 진행(9.20)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을 통해 시·도별 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0.4)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가내시 통보(10월초)
- ‘19년 신규신청자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1.9)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11.16, 기한 엄수)
- 18년 기존사업자
 - ‘18년도 시범사업자(9개소)는 ‘19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가 12.7일까지 제출)

■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12월중)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12월)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19.1월)

■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19.1~2월)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19.1~2월)

■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조직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인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별도 마련 예정)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1.15)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 및 시·군에 대해 ‘20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표]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16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17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18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사업 유형	☐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기타()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해당하는 란에 전부 표시

4. 충남도청 사회적 농업 관계실과 협의 회의록

회의	회의명	
일시: 2019.10.22.(화) 장소: 충남도청 105호	참석 자	2국 1실 1관 8개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여성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보육지원팀,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청년과 청년일자리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남북교류팀,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 청소년팀),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추천해서 주기로 함
- 주민자치회가 성숙한 곳은 도내에서도 10군데 정도로 사업의 취지 설명과 함께 참여 여부 확인 후 추천하고자 함

☐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 아동분야는 노인분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보다는 치유사업(심리정서 사업)으로 교육적인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 예방차원에서도 사회적농업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아동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익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인권문제 발생).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정서 사업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시공간적으로 대상자들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함
- 참여하는 아이들이 회차별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 및 구축이 필요함 ⇒ 시설별로 배치되어있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하거나 프로그램 안에서 보조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치해 둬(지역 네트워크를 꾸리는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

- 대상별 분석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만들어 던져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함
- 시설(농장) 관계자들이 경계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도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임

□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

- 과수원 시설의 경우, 잘하는 농장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접근이 가능할 듯함(그러나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 관련된 유관기관(ex. 장애인관련시설)의 '도 협회장'이 각 지역별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이나 그룹을 추천할 수 있을듯함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 사회적농업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있어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근교지역에서 운영하는게 좋을 듯함. 농촌(시골)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어려움 ⇒ 2track 으로 운영할 예정임(농촌, 도시근교)
- 청소년, 장애인, 노인은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시군의 100원 택시등과 직접 계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듯함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

- 사회적농업은 효율성이 낮은 프로그램임. 그러나 사회적농업을 효율성으로 보면 안될듯함
- 공동작업장, 농촌체험마을의 형식과 사회적농업이 유사하다고 생각됨

□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 현재 읍면동 단위로 어린이집, 놀이시설, 장난감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육쪽에서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지

최종보고회

궁금함. ⇒ 어린이집에서 가는 농장체험 형식으로 접근하되, 장애를 가진 어린이집 아이들과-부모님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관과 연계(ex. 서산 장애인 어린이집)

- 농업정책과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시행되고 있으니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면 요청하길 바람

□ 김기홍 박사

- 프로그램별로 10명 이내로 팀을 꾸려서 소그룹 형식으로 주기적인 진행이 필요함
- 한 개의 시설↔농장이 매칭하여 지역별이 아닌 시설별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